第298回國會 (臨時會) 教育科學技術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1年3月7日(月)

場 所 教育科學技術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1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계속)
18.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계속)
19.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20.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폐지법률안(계속)
3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9.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계속)
80.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계속)
8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5.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계속)
86. 대학도서관진흥법안(계속)
87. 大韓民國學術院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5.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2.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계속)
113. 韓國專門大學敎育協議會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4. 科學館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5. 科學館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4.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9.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0.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5.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6.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7.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8.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9.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140. 현안보고(계속)
   가. 2010년도 교과위 소관 법안 직권상정 관련
   나. 경기·강원 6개 도시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
   다. 사분위 임시이사 파견대학 정상화 현황 관련
   라. 대학생 등록금 대책 관련
   마. 영림중·호반초 내부형공모 교장 임용제청 거부 관련

審査된案件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박준선·이명수·이성헌·김정권·김성회·임동규·김태원·이한성·유승민·유기준·김종률 의원 발의)(계속) ····· 11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김성수·유정현·이범래·여상규·정해걸·조진래·김정권·유정복·이사철·조전혁·유재중·이애주 의원 발의)(계속) ····· 11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신성범·이인기·권택기·안홍준·김성태·이성헌·김정훈·최구식·조전혁·황영철·정두언 의원 발의)(계속) ····· 11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영진·김재윤·김춘진·김효석·권영길·박은수·송민순·양승조·이미경·최영희·최재성·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 11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강창일·권영진·김동철·김상희·김성곤·김영진·김용구·김종률·김재윤·김춘진·노영민·문희상·박기춘·박대해·송민순·안민석·이군현·최문순·최재성·홍재형 의원 발의)(계속) ····· 11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권영길·전병헌·신학용·이찬열·백원우·김영진·강기정·김춘진·안민석·최영희·최규식·유원일 의원 발의)(계속) ····· 12
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이명수·김을동·이사철·여상규·안규백·황영철·박영아·김정훈·김학송 의원 발의)(계속) ····· 12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심재철·조원진·김세연·이한성·김태환·박영아·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9904)(계속) ····· 12
1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김영진·강창일·박은수·유성엽·김진표·홍희덕·강기갑·곽정숙·이정희·안민석·유원일·최문순 의원 발의)(계속) ····· 12
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강기정·최영희·김재윤·이석현·권영길·김춘진·최재성·전현희·최철국·주승용·우윤근·양승조·김영진·김동철·이미경·김진표 의원 발의)(계속) ····· 12
1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신성범·이인기·권택기·안홍준·김성태·이성헌·김정훈·최구식·조전혁·황영철·정두언·이해봉 의원 발의)(계속) ····· 12
1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홍사덕·김태환·이해봉·유승민·박종근·배영식·정희수·주성영·이명규·조전혁·최경환·이인기·김성조·박보환·주호영·조원진·원희목·이한구·권영진·김세연·김정권·손숙미·정해걸·한선교·배은희·안상수·이화수·이정현·이철우·이성헌 의원 발의)(계속) ····· 12
1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동철·강창일·홍재형·김우남·박은수·안규백·안민석·이용섭·최문순·최재성·김춘진 의원 발의)(계속) ····· 12
1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 의원 대표발의)(원희목·박은수·안형환·임두성·강명순·이두아·김성곤·손범규·이애주·손숙미 의원 발의)(계속) ····· 12
1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관 의원 대표발의)(이범관·윤영·유성엽·이한성·김성곤·임동규·신성범·오제세·박준선·박기춘·정양석·송영선·신낙균·정해걸·강석호·배영식·박선영·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12
17.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강창일·김재균·최재성·양승조·김우남·김희철·이정선·김성순·송영길·김상희·박주선·김진표·박은수·김충조·유성엽·김재윤·송민순 의원 발의)(계속) ····· 12
18.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강석호·곽정숙·권영길·김낙성·김상희·김성곤·김성수·김재윤·김종률·변재일·송광호·신성범·안민석·유성엽·이강래·이시종·이정희·이춘석·이한성·조배숙·조진래·최규성·최인기·최철국·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 12
19.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발의)(김춘진 의원 외 86인 발의)(계속) ····· 12
20.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강창일·안민석·김종률·김춘진·강기갑·박주선·김재균·천정배·김재윤·최철국·원희룡·이윤성·이진삼·권영진·김동철·강운태·권영길·강기정·이용섭·조영택·유승민·김동성·김영우·정미경·공성진·노영민·김옥이 의원 발의)(계속) ····· 12
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김우남·김성곤·홍재형·송영길·김재균·김재윤·박은수·안민석·박선숙·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 12
2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유기준·박기춘·이낙연·박영선·이상민·이경재·신영수·진영·김금래·여상규 의원 발의)(계속) ····· 12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손숙미·이애주·이한성·박보환·이해봉·박종근·조원진·원희목·이종혁 의원 발의)(계속) ····· 12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유성엽·변재일·이상민·김상희·이시종·강기갑·곽정숙·이정희·홍희덕·송영길·김재윤·우제창·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 12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우남·이해봉·김종률·양승조·오제세·유성엽·김동철·이석현·안규백·박주선·안민석·문학진 의원 발의)(계속) ····· 13
26.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이한성·유원일·이명수·김정권·박은수·전혜숙·이종걸·김영록·김성곤·이성헌 의원 발의)(계속) ····· 13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명규・이한성・이명수・이인기・김옥이・유기준・안홍준・권영길・서상기・김효재・조전혁・김무성・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13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 의원 대표발의)(원희목・이춘식・현경병・손숙미・오제세・김소남・박은수・전혜숙・권택기・유정현・임동규・신성범 의원 발의)(계속) ····13
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김세연・박영아・서상기・안효대・유재중・이애주・이철우・정두언・조진래・허원제 의원 발의)(계속) ····13
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영진・김성곤・김재윤・이석현・강창일・박영선・우윤근・최재성・김영록・김진표・권영길・오제세・조승수・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13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윤석용・김성태・최구식・신성범・서상기・김선동・주광덕・현기환・박민식・구상찬・김성식・정태근 의원 발의)(계속) ····13
3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3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강창일・손숙미・노영민・이춘석・김우남・신학용・박은수・이석현・최철국・전현희・김재윤・박상돈・김종률・송영길・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13
3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세환・강창일・김영진・김부겸・조배숙・이미경・안민석・유선호・유성엽・이용섭・최종원・최문순・권영길・김진애・이낙연・최재성・김유정・박은수・전혜숙・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13
3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성엽・이한성・강석호・권영진・김영진・김효재・정갑윤・권성동・정해걸・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13
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최규성・이찬열・안민석・문학진・장병완・김상희・권영길・천정배・조배숙・이정희・유성엽・조승수 의원 발의)(계속) ····13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영진・김성곤・김재윤・이석현・강창일・박영선・우윤근・최재성・김영록・김진표・권영길・오제세・조승수・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13
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윤석용・김성태・최구식・신성범・서상기・김선동・주광덕・현기환・박민식・구상찬・김성식・정태근 의원 발의)(계속) ····13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나경원・김성조・윤석용・송광호・황우여・이혜훈・홍사덕・정미경・정해걸 의원 발의)(계속) ····13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강창일・송민순・김효석・송영길・김성곤・우제창・문학진・최인기・이용섭・이광재・김성순・홍희덕・안규백・정세균・추미애・최규식・최재성・안민석・김진표・김춘진・최문순 의원 발의)(계속) ····13
4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안민석・최재성・최문순・이상민・김재균・강기갑・곽정숙・이정희・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13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이미경・김영진・김진표・최재성・권영길・김춘진・김재윤・양승조・김영록・최영희・우윤근・최철국・홍희덕・강기갑・곽정숙・이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1)(계속) ····13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양승조・박은수・최재성・김영진・안민석・김상희・이석현・백재현・이미경・서갑원・송민순・문학진・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13
4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강창일・권영진・김동철・김상희・김성곤・김영진・김용구・김종률・김재윤・김춘진・노영민・문희상・박기춘・박대해・송민순・안민석・이군현・최문순・최재성・홍재형 의원 발의)(계속) ····13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백원우・전현희・안민석・권영길・김춘진・최문순・김영진・양승조・김진표・곽정숙・강기갑・이정희 의원 발의)(계속) ····14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임동규・이한성・손범규・김성

수・권영진・안상수・서상기・황우여・조전혁 의원 발의)(계속) ····· 14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권영길・김영진・김재윤・김춘진・김효석・양승조・이미경・최영희・최재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4348)(계속) ····· 14
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조승수・최영희・김우남・김종률・유원일・권영길・강기갑・홍희덕・안효대・곽정숙・이정희・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 14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발의)(김춘진 의원 외 86인 발의)(계속) ····· 14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7677)(계속) ····· 14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839)(계속) ····· 14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심재철・조원진・김세연・이한성・김태환・박영아・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계속) ···· 14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최규성・김동철・안민석・문학진・장병완・조배숙・김상희・권영길・강창일・추미애・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14
5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박선영・류근찬・김낙성・김창수・변웅전・권선택・임영호・이진삼・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14
5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재균・강창일・김영록・강기정・김동철・박상돈・양승조・최철국・노영민・이춘석・이시종・조정식・김성곤・김기현・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 14
5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강기갑・이정희・홍희덕・곽정숙・김영진・안민석・최재성・김춘진・유원일・김우남・최영희・이석현・안규백・문학진・김창수・박영선・박은수・송훈석・이종걸・김상희・이미경・김재윤・박상돈・강창일・정장선・원유철・최문순・백재현・이명수・김희철・권선택 의원 발의)(계속) ····· 14
5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손범규・신성범・원희목・안효대・강석호・성윤환・정두언・안상수・현기환 의원 발의)(계속) ····· 14
5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김옥이・이한성・이춘식・유승민・안홍준・홍정욱・임동규・이화수・원희룡・권영진・김세연・송영선 의원 발의)(계속) ····· 14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이경재・김정권・이사철・유기준・이주영・이인기・김성곤・서상기・이종혁・최구식・정해걸・박선영・이명수・강성천・김성순・유일호・안홍준・송훈석 의원 발의)(계속) ····· 14
6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최규성・김동철・안민석・문학진・장병완・조배숙・김상희・권영길・강창일・추미애・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14
6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강기갑・권영길・박은수・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한성・이정희・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 14
6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세환・백재현・김진표・이낙연・전혜숙・권영길・홍희덕・최문순・박은수・최종원・김재윤・조영택・안민석・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 14
6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서상기・정갑윤・황우여・나성린・윤상현・조전혁・김용구・이정선・고승덕・김세연・정해걸・여상규・김금래・이진복・원희목・김소남・안효대・김기현・조진래 의원 발의)(계속) ····· 14
6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이사철・강석호・공성진・이명규・정영희・이군현・원유철・차명진・안상수 의원 발의)(계속) ····· 14
6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배은희・김성태・이달곤・주성영・고승덕・이한성・원희목・임두성・김기현 의원 발의)(계속) ····· 14
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김성수・안민석・이한성・정두언・정의화・이군현・공성진・권영진・강승규 의원 발의)(계속) ····· 14

6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성태・한선교・이한성・유성엽・유정복・박준선・유기준・이종혁・배은희・주광덕・백성운・김충환・정해걸・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 15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김무성・손숙미・홍장표・현기환・김세연・박민식・이종혁・성윤환・박대해 의원 발의)(계속) ····· 15
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조진래・신성범・정해걸・조문환・김춘진・송훈석・강석호・임두성・이광재 의원 발의)(계속) ····· 15
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고승덕・배영식・신학용・임두성・유정현・임영호・이한성・이혜훈・장광근・이성헌・신영수 의원 발의)(계속) ····· 15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김우남・송민순・김정권・김효석・이명수・유성엽・조영택・강기정・최인기・우제창・박영선・안규백・박주선・이미경・김재윤・손범규・김상희・박은수・강기갑・곽정숙・김춘진・강창일・최영희・문학진・이용섭・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15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강기갑・곽정숙・이정희・조승수・안민석・최문순・홍희덕・김상희・김영진・유원일 의원 발의)(계속) ····· 15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주광덕・김옥이・이성헌・김영진・고승덕・이애주・김세연・김기현・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 15
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김정훈・원희목・강석호・서상기・나성린・권영진・이춘식・정영희・이애주・안형환・백성운・김금래 의원 발의)(계속) ····· 15
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심재철・조원진・이한성・김태환・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계속) ····· 15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성수・이명수・강창일・오제세・권영길・강기갑・신건・황영철・김우남・김용구 의원 발의)(계속) ····· 15
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조배숙・배영식・조영택・김영진・정해걸・홍영표・이미경・정의화・윤영・김진표 의원 발의)(계속) ····· 15
7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배영식・조정식・최규성・권영길・윤상일・박은수・김재균・박주선・안민석・정영희・추미애・김상희・박지원・최영희・강용석・김춘진 의원 발의)(계속) ····· 15
79.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박영선・조경태・유성엽・양승조・강기갑・권영길・이성헌・김재윤・강창일・조영택・강기정・김을동 의원 발의)(계속) ····· 15
80.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조전혁・서상기・김선동・신영수・유성엽・정태근・정영희・이군현・정두언・박보환・박순자・윤석용・안경률・신상진・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 15
8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한성・김세연・임동규・김소남・이상민・우윤근・주성영・장윤석・손범규・홍일표・노철래・박영선・박지원 의원 발의)(계속) ····· 15
8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심재철・조원진・이한성・김태환・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9909)(계속) ····· 15
8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성수・이명수・강창일・오제세・강기갑・황영철・김우남・김영진・김선동・김용구 의원 발의)(계속) ····· 15
8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김소남・이정선・윤상현・서상기・황영철・이인기・나성린・김세연・이명규・손숙미・박보환・허원제・김동성 의원 발의)(계속) ····· 15
85.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권영진・이사철・강석호・서상기・공성진・이명규・정영희・김정훈・이군현・원유철 의원 발의)(계속) ····· 15
86. 대학도서관진흥법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이한성・이정선・김성수・김정권・박선영・이춘식・안상수・손범규・김성곤・유성엽・황우여・김영진・신상진・강석호・임동규・이인기・김소남・백성운・오제세・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 15

87. 大韓民國學術院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
8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이성헌·현기환·송영선·신성범·윤석용·권영진·김성식·김성태·박종희·김효재·이정선 의원 발의)(계속) ···· 16
8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심재철·조원진·이한성·김태환·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계속) ····· 16
9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세환·장병완·이미경·안민석·문학진·김재윤·이용섭·박선숙·유성엽·김성곤·최문순·최재성·최영희·조승수·권영길·김부겸·서갑원·조배숙·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 16
9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성수·이명수·강창일·오제세·강기갑·황영철·김우남·김영진·김선동·김용구 의원 발의)(계속) ····· 16
9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서상기·김세연·정두언·조전혁·이성헌·김효재·김정훈·손숙미·이경재·조문환·배은희 의원 발의)(계속) ····· 16
9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
9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김소남·이정선·윤상현·서상기·황영철·이인기·나성린·김세연·이명규·손숙미·박보환·허원제·김동성 의원 발의)(계속) ···· 16
95.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
9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김소남·박보환·신영수·안상수·이춘식·이화수·임동규·정영희·조문환·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 16
9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호 의원 대표발의)(진성호·성윤환·김태원·김성곤·임동규·이인기·안홍준·김동성·황영철·안효대·이정선·허태열·김소남·이화수·김성순 의원 발의)(계속) ····· 16
9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송영선·이한성·김성수·김정권·강명순·유정현·김종률·이인기·신상진·정병국·주광덕 의원 발의)(계속) ····· 16
9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권영진·황진하·김성태·안효대·임해규·이해봉·황영철·정태근·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 16
10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영희 의원 대표발의)(정영희·노철래·이한성·임영호·조경태·유정현·김춘진·박보환·윤상일·정해걸·박영아 의원 발의)(계속) ····· 16
10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박은수·최철국·전현희·백원우·양승조·강기정·김우남·안민석·이종걸·최영희·김부겸·문학진 의원 발의)(계속) ····· 16
10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정장선·김춘진·김성수·박기춘·오제세·김종률·유성엽·장세환·김동철·이상민·신낙균·이윤석·김영진·강기정·김재균·이무영·권영진·송민순·문학진·이용삼·안민석·강성천·권영길·전혜숙·이해봉·김상희·박은수·강기갑·이정희·강석호·홍희덕·곽정숙 의원 발의)(계속) ····· 16
1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장세환·김춘진·최문순·홍희덕·강기갑·곽정숙·이정희·유성엽·권영진·박은수·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16
10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안민석·김춘진·권영길·정영희·조전혁·권영진·박보환·김용구·임영호·권선택 의원 발의)(계속) ····· 16
10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 의원 대표발의)(박종희·고승덕·서청원·신영수·안홍준·현경병·조정식·이한성·안효대·이해봉·진성호 의원 발의)(계속) ····· 16
10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정영희·유재중·허원제·김춘진·원희목·이애주·이명규·안효대·이용경·안규백·김소남·이재선 의원 발의)(계속) ····· 16
1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
10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윤상현・이한성・박준선・강석호・안효대・이인기・안홍준・정영희・김성태・손범규・이해봉・박종희・정미경 의원 발의)(계속) ····· 17
10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남경필・이한성・이명수・강석호・배영식・진성호・이해봉・정태근・정갑윤・조전혁・김용태 의원 발의)(계속) ····· 17
1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전혁 의원 대표발의)(조전혁・구상찬・권영진・김선동・김성태・김세연・김학용・김효재・박보환・손범규・신지호・안홍준・유기준・유성엽・이명수・이시종・이해봉・이화수・임해규・정영희 의원 발의)(계속) ····· 17
1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영진・안민석・백재현・박지원・원혜영・최재성・양승조・안규백・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 17
112.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이한성・조전혁・황우여・박은수・구상찬・정영희・윤상일・장제원・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17
113. 韓國專門大學敎育協議會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권영길・권영진・김영진・김재윤・김춘진・김효석・박기춘・송민순・임해규・최규성・최영희・최재성 의원 발의)(계속) ····· 17
114. 科學館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115. 科學館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조문환・정해걸・이사철・손범규・임영호・이진삼・김낙성・이종혁・김을동 의원 발의)(계속) ····· 17
11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영진・이상민・김춘진・서상기・정영희・최재성・권영길・안민석・조영택・전병헌・김진표 의원 발의)(계속) ····· 17
1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철국・주승용・김재균・최규성・양승조・김진표・문학진・박선숙・김성곤 의원 발의)(계속) ····· 17
1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박민식・조진래・김성곤・이학재・송훈석・이성헌・박선영・노철래・윤상일 의원 발의)(계속) ····· 17
1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정병국・김우남・김춘진・고승덕・임영호・우제창・양승조・임동규・김용구・김창수・김성수・이상민・정해걸・송영선・임두성・박은수・이윤석・김선동・강명순・김동철・송영길・강운태 의원 발의)(계속) ····· 17
1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이성헌・이한성・김우남・김정권・안홍준・진성호・송영선・신학용・김성조・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 17
1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이종걸・서갑원・안민석・정영희・이윤석・김재윤・김영록・이인제・김성곤・이용경・조영택・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 17
1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1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권영진・허원제・권성동・김세연・황우여・박영아・이명규・유재중・안효대・정진석・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 17
124.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유성엽・홍정욱・정장선・이인기・김태환・이달곤・이명규・정영희・정하균・백재현・김정훈・주승용・배은희・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 17
12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12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12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철국・김재균・강창일・최규성・문학진・양승조・주승용・김재윤・김유정・박선숙・김창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9163)(계속) ····· 17

12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철국·주승용·김재균·최규성·김진표·문학진·김성곤·김창수·유선호·김유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9644)(계속) ····· 18
129.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130.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13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종근 의원 대표발의)(박종근·유기준·정희수·주호영·안효대·안상수·정해걸·양정례·서청원·유정복·임두성·최연희·최병국·김성수·정태근 의원 발의)(계속) ····· 18
13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13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13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이종혁·서상기·조원진·김성수·노철래·이한성·박보환·김효재·이명규·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 18
135.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136.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김유정·박상천·유정현·조영택·김소남·유선호·임해규·신낙균·노영민·안민석·박영선·강기정·김효석·최인기·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18
137.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이성헌·이한성·이명수·한선교·임두성·양승조·정해걸·김성수·안홍준·김춘진 의원 발의)(계속) ····· 18
138.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139.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영진·안민석·김성곤·손범규·이정선·나성린·송광호·조정식·백재현·박지원·김금래 의원 발의)(계속) ····· 18
140. 현안보고(계속) ····· 42
가. 2010년도 교과위 소관 법안 직권상정 관련
나. 경기·강원 6개 도시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
다. 사분위 임시이사 파견대학 정상화 현황 관련
라. 대학생 등록금 대책 관련
마. 영림중·호반초 내부형공모 교장 임용제청 거부 관련

(10시27분 개의)

○委員長代理 徐相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국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오후에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기타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박준선·이명수·이성헌·김정권·김성회·임동규·김태원·이한성·유승민·유기준·김종률 의원 발의)(계속)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김성수·유정현·이범래·여상규·정해걸·조진래·김정권·유정복·이사철·조전혁·유재중·이애주 의원 발의)(계속)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신성범·이인기·권택기·안홍준·김성태·이성헌·김정훈·최구식·조전혁·황영철·정두언 의원 발의)(계속)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영진·김재윤·김춘진·김효석·권영길·박은수·송민순·양승조·이미경·최영희·최재성·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강창일·권영진·김동철·김상희·김성곤·김영진·김용구·김종률·김재윤·김춘진·노영민·문희상·박기춘·박대해·송민순·안민석·이군현·최문순·최재성·홍재형 의원 발의)(계속)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권영길·전병헌·신학용·이찬열·백원우·김영진·강기정·김춘진·안민석·최영희·최규식·유원일 의원 발의)(계속)

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이명수·김을동·이사철·여상규·안규백·황영철·박영아·김정훈·김학송 의원 발의)(계속)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심재철·조원진·김세연·이한성·김태환·박영아·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9904)(계속)

1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김영진·강창일·박은수·유성엽·김진표·홍희덕·강기갑·곽정숙·이정희·안민석·유원일·최문순 의원 발의)(계속)

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강기정·최영희·김재윤·이석현·권영길·김춘진·최재성·전현희·최철국·주승용·우윤근·양승조·김영진·김동철·이미경·김진표 의원 발의)(계속)

1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신성범·이인기·권택기·안홍준·김성태·이성헌·김정훈·최구식·조전혁·황영철·정두언·이해봉 의원 발의)(계속)

1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홍사덕·김태환·이해봉·유승민·박종근·배영식·정희수·주성영·이명규·조전혁·최경환·이인기·김성조·박보환·주호영·조원진·원희목·이한구·권영진·김세연·김정권·손숙미·정해걸·한선교·배은희·안상수·이화수·이정현·이철우·이성헌 의원 발의)(계속)

1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동철·강창일·홍재형·김우남·박은수·안규백·안민석·이용섭·최문순·최재성·김춘진 의원 발의)(계속)

1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 의원 대표발의)(원희목·박은수·안형환·임두성·강명순·이두아·김성곤·손범규·이애주·손숙미 의원 발의)(계속)

1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관 의원 대표발의)(이범관·윤영·유성엽·이한성·김성곤·임동규·신성범·오제세·박준선·박기춘·정양석·송영선·신낙균·정해걸·강석호·배영식·박선영·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17.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강창일·김재균·최재성·양승조·김우남·김희철·이정선·김성순·송영길·김상희·박주선·김진표·박은수·김충조·유성엽·김재윤·송민순 의원 발의)(계속)

18.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강석호·곽정숙·권영길·김낙성·김상희·김성곤·김성수·김재윤·김종률·변재일·송광호·신성범·안민석·유성엽·이강래·이시종·이정희·이춘석·이한성·조배숙·조진래·최규성·최인기·최철국·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19.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발의)(김춘진 의원 외 86인 발의)(계속)

20.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강창일·안민석·김종률·김춘진·강기갑·박주선·김재균·천정배·김재윤·최철국·원희룡·이윤성·이진삼·권영진·김동철·강운태·권영길·강기정·이용섭·조영택·유승민·김동성·김영우·정미경·공성진·노영민·김옥이 의원 발의)(계속)

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김우남·김성곤·홍재형·송영길·김재균·김재윤·박은수·안민석·박선숙·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2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유기준·박기춘·이낙연·박영선·이상민·이경재·신영수·진영·김금래·여상규 의원 발의)(계속)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손숙미·이애주·이한성·박보환·이해봉·박종근·조원진·원희목·이종혁 의원 발의)(계속)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유성엽·변재일·이상민·김상희·이시종·강기갑·곽정숙·이정희·홍희덕·송영길·김재윤·우제창·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우남·이해봉·김종률·양승조·오제세·유성엽·김동철·이석현·안규백·박주선·안민석·문학진 의원 발의)(계속)

26.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이한성·유원일·이명수·김정권·박은수·전혜숙·이종걸·김영록·김성곤·이성헌 의원 발의)(계속)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명규·이한성·이명수·이인기·김옥이·유기준·안홍준·권영길·서상기·김효재·조전혁·김무성·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 의원 대표발의)(원희목·이춘식·현경병·손숙미·오제세·김소남·박은수·전혜숙·권택기·유정현·임동규·신성범 의원 발의)(계속)

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김세연·박영아·서상기·안효대·유재중·이애주·이철우·정두언·조진래·허원제 의원 발의)(계속)

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영진·김성곤·김재윤·이석현·강창일·박영선·우윤근·최재성·김영록·김진표·권영길·오제세·조승수·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윤석용·김성태·최구식·신성범·서상기·김선동·주광덕·현기환·박민식·구상찬·김성식·정태근 의원 발의)(계속)

3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강창일·손숙미·노영민·이춘석·김우남·신학용·박은수·이석현·최철국·전현희·김재윤·박상돈·김종률·송영길·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3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세환·강창일·김영진·김부겸·조배숙·이미경·안민석·유선호·유성엽·이용섭·최종원·최문순·권영길·김진애·이낙연·최재성·김유정·박은수·전혜숙·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3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성엽·이한성·강석호·권영진·김영진·김효재·정갑윤·권성동·정해걸·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최규성·이찬열·안민석·문학진·장병완·김상희·권영길·천정배·조배숙·이정희·유성엽·조승수 의원 발의)(계속)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영진·김성곤·김재윤·이석현·강창일·박영선·우윤근·최재성·김영록·김진표·권영길·오제세·조승수·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진·윤석용·김성태·최구식·신성범·서상기·김선동·주광덕·현기환·박민식·구상찬·김성식·정태근 의원 발의)(계속)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나경원·김성조·윤석용·송광호·황우여·이혜훈·홍사덕·정미경·정해걸 의원 발의)(계속)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강창일·송민순·김효석·송영길·김성곤·우제창·문학진·최인기·이용섭·이광재·김성순·홍희덕·안규백·정세균·추미애·최규식·최재성·안민석·김진표·김춘진·최문순 의원 발의)(계속)

4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안민석·최재성·최문순·이상민·김재균·강기갑·곽정숙·이정희·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이미경·김영진·김진표·최재성·권영길·김춘진·김재윤·양승조·김영록·최영희·우윤근·최철국·홍희덕·강기갑·곽정숙·이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1)(계속)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양승조·박은수·최재성·김영진·안민석·김상희·이석현·백재현·이미경·서갑원·송민순·문학진·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4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강창일·권영진·김동철·김상희·김성곤·김영진·김용구·김종률·김재윤·김춘진·노영민·문희상·박기춘·박대해·송민순·안민석·이군현·최문순·최재성·홍재형 의원 발의)(계속)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백원우·전현희·안민석·권영길·김춘진·최문순·김영진·양승조·김진표·곽정숙·강기갑·이정희 의원 발의)(계속)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임동규·이한성·손범규·김성수·권영진·안상수·서상기·황우여·조전혁 의원 발의)(계속)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권영길·김영진·김재윤·김춘진·김효석·양승조·이미경·최영희·최재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4348)(계속)

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조승수·최영희·김우남·김종률·유원일·권영길·강기갑·홍희덕·안효대·곽정숙·이정희·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발의)(김춘진 의원 외 86인 발의)(계속)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7677)(계속)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839)(계속)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심재철·조원진·김세연·이한성·김태환·박영아·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계속)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최규성·김동철·안민석·문학진·장병완·조배숙·김상희·권영길·강창일·추미애·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5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박선영·류근찬·김낙성·김창수·변웅전·권선택·임영호·이진삼·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5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재균·강창일·김영록·강기정·김동철·박상돈·양승조·최철국·노영민·이춘석·이시종·조정식·김성곤·김기현·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5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강기갑·이정희·홍희덕·곽정숙·김영진·안민석·최재성·김춘진·유원일·김우남·최영희·이석현·안규백·문학진·김창수·박영선·박은수·송훈석·이종걸·김상희·이미경·김재윤·박상돈·강창일·정장선·원유철·최문순·백재현·이명수·김희철·권선택 의원 발의)(계속)

5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손범규·신성범·원희목·안효대·강석호·성윤환·정두언·안상수·현기환 의원 발의)(계속)

5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김옥이·이한성·이춘식·유승민·안홍준·홍정욱·임동규·이화수·원희룡·권영진·김세연·송영선 의원 발의)(계속)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이경재·김정권·이사철·유기준·이주영·이인기·김성곤·서상기·이종혁·최구식·정해걸·박선영·이명수·강성천·김성순·유일호·안홍준·송훈석 의원 발의)(계속)

6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최규성·김동철·안민석·문학진·장병완·조배숙·김상희·권영길·강창일·추미애·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6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강기갑·권영길·박은수·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한성·이정희·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6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세환·백재현·김진표·이낙연·전혜숙·권영길·홍희덕·최문순·박은수·최종원·김재윤·조영택·안민석·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6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서상기·정갑윤·황우여·나성린·윤상현·조전혁·김용구·이정선·고승덕·김세연·정해걸·여상규·김금래·이진복·원희목·김소남·안효대·김기현·조진래 의원 발의)(계속)

6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이사철·강석호·공성진·이명규·정영희·이군현·원유철·차명진·안상수 의원 발의)(계속)

6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배은희·김성태·이달곤·주성영·고승덕·이한성·원희목·임두성·김기현 의원 발의)(계속)

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김성수·안민석·이한성·정두언·정의화·이군현·공성진·권영진·강승규 의원 발의)(계속)

6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성태・한선교・이한성・유성엽・유정복・박준선・유기준・이종혁・배은희・주광덕・백성운・김충환・정해걸・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김무성・손숙미・홍장표・현기환・김세연・박민식・이종혁・성윤환・박대해 의원 발의)(계속)

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조진래・신성범・정해걸・조문환・김춘진・송훈석・강석호・임두성・이광재 의원 발의)(계속)

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고승덕・배영식・신학용・임두성・유정현・임영호・이한성・이혜훈・장광근・이성헌・신영수 의원 발의)(계속)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김우남・송민순・김정권・김효석・이명수・유성엽・조영택・강기정・최인기・우제창・박영선・안규백・박주선・이미경・김재윤・손범규・김상희・박은수・강기갑・곽정숙・김춘진・강창일・최영희・문학진・이용섭・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강기갑・곽정숙・이정희・조승수・안민석・최문순・홍희덕・김상희・김영진・유원일 의원 발의)(계속)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주광덕・김옥이・이성헌・김영진・고승덕・이애주・김세연・김기현・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김정훈・원희목・강석호・서상기・나성린・권영진・이춘식・정영희・이애주・안형환・백성운・김금래 의원 발의)(계속)

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심재철・조원진・이한성・김태환・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계속)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성수・이명수・강창일・오제세・권영길・강기갑・신건・황영철・김우남・김용구 의원 발의)(계속)

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조배숙・배영식・조영택・김영진・정해걸・홍영표・이미경・정의화・윤영・김진표 의원 발의)(계속)

7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배영식・조정식・최규성・권영길・윤상일・박은수・김재균・박주선・안민석・정영희・추미애・김상희・박지원・최영희・강용석・김춘진 의원 발의)(계속)

79.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박영선・조경태・유성엽・양승조・강기갑・권영길・이성헌・김재윤・강창일・조영택・강기정・김을동 의원 발의)(계속)

80.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조전혁・서상기・김선동・신영수・유성엽・정태근・정영희・이군현・정두언・박보환・박순자・윤석용・안경률・신상진・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8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한성・김세연・임동규・김소남・이상민・우윤근・주성영・장윤석・손범규・홍일표・노철래・박영선・박지원 의원 발의)(계속)

8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심재철・조원진・이한성・김태환・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9909)(계속)

8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성수・이명수・강창일・오제세・강기갑・황영철・김우남・김영진・김선동・김용구 의원 발의)(계속)

8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김소남・이정선・윤상현・서상기・황영철・이인기・나성린・김세연・이명규・손숙미・박보환・허원제・김동성 의원 발의)(계속)

85.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임해규・권영진・이사철・강석호・서상기・공성진・이명규・정영희・김정훈・이군현・원유철 의원 발의)(계속)

86. **대학도서관진흥법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이한성・이정선・김성수・김정권・박선영・이춘식・안상수・손범규・김성곤・유성엽・황우여・김영진・신상진・강석호・임동규・이인기・김소남・백성운・오제세・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87. **大韓民國學術院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이성헌·현기환·송영선·신성범·윤석용·권영진·김성식·김성태·박종희·김효재·이정선 의원 발의)(계속)

8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심재철·조원진·이한성·김태환·배은희·구상찬 의원 발의)(계속)

9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세환·장병완·이미경·안민석·문학진·김재윤·이용섭·박선숙·유성엽·김성곤·최문순·최재성·최영희·조승수·권영길·김부겸·서갑원·조배숙·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9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성수·이명수·강창일·오제세·강기갑·황영철·김우남·김영진·김선동·김용구 의원 발의)(계속)

9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서상기·김세연·정두언·조전혁·이성헌·김효재·김정훈·손숙미·이경재·조문환·배은희 의원 발의)(계속)

9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김소남·이정선·윤상현·서상기·황영철·이인기·나성린·김세연·이명규·손숙미·박보환·허원제·김동성 의원 발의)(계속)

95.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김소남·박보환·신영수·안상수·이춘식·이화수·임동규·정영희·조문환·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9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호 의원 대표발의)(진성호·성윤환·김태원·김성곤·임동규·이인기·안홍준·김동성·황영철·안효대·이정선·허태열·김소남·이화수·김성순 의원 발의)(계속)

9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송영선·이한성·김성수·김정권·강명순·유정현·김종률·이인기·신상진·정병국·주광덕 의원 발의)(계속)

9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권영진·황진하·김성태·안효대·임해규·이해봉·황영철·정태근·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10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영희 의원 대표발의)(정영희·노철래·이한성·임영호·조경태·유정현·김춘진·박보환·윤상일·정해걸·박영아 의원 발의)(계속)

10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박은수·최철국·전현희·백원우·양승조·강기정·김우남·안민석·이종걸·최영희·김부겸·문학진 의원 발의)(계속)

10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정장선·김춘진·김성수·박기춘·오제세·김종률·유성엽·장세환·김동철·이상민·신낙균·이윤석·김영진·강기정·김재균·이무영·권영진·송민순·문학진·이용삼·안민석·강성천·권영길·전혜숙·이해봉·김상희·박은수·강기갑·이정희·강석호·홍희덕·곽정숙 의원 발의)(계속)

1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장세환·김춘진·최문순·홍희덕·강기갑·곽정숙·이정희·유성엽·권영진·박은수·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10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안민석·김춘진·권영길·정영희·조전혁·권영진·박보환·김용구·임영호·권선택 의원 발의)(계속)

10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 의원 대표발의)(박종희·고승덕·서청원·신영수·안홍준·현경병·조정식·이한성·안효대·이해봉·진성호 의원 발의)(계속)

10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정영희·유재중·허원제·김춘진·원희목·이애주·이명규·안효대·이용경·안규백·김소남·이재선 의원 발의)(계속)

1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윤상현·이한성·박준선·강석호·안효대·이인기·안홍준·정영희·김성태·손범규·이해봉·박종희·정미경 의원 발의)(계속)

10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남경필·이한성·이명수·강석호·배영식·진성호·이해봉·정태근·정갑윤·조전혁·김용태 의원 발의)(계속)

1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전혁 의원 대표발의)(조전혁·구상찬·권영진·김선동·김성태·김세연·김학용·김효재·박보환·손범규·신지호·안홍준·유기준·유성엽·이명수·이시종·이해봉·이화수·임해규·정영희 의원 발의)(계속)

1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영진·안민석·백재현·박지원·원혜영·최재성·양승조·안규백·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112.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이한성·조전혁·황우여·박은수·구상찬·정영희·윤상일·장제원·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113. **韓國專門大學敎育協議會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권영길·권영진·김영진·김재윤· 김춘진·김효석· 박기춘·송민순·임해규·최규성·최영희 ·최재성 의원 발의)(계속)

114. **科學館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5. **科學館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조문환·정해걸·이사철·손범규·임영호·이진삼·김낙성·이종혁·김을동 의원 발의)(계속)

11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영진·이상민·김춘진·서상기·정영희·최재성·권영길·안민석·조영택·전병헌·김진표 의원 발의)(계속)

1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철국·주승용·김재균·최규성·양승조·김진표·문학진·박선숙·김성곤 의원 발의)(계속)

1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박민식·조진래·김성곤·이학재·송훈석·이성헌·박선영·노철래·윤상일 의원 발의)(계속)

1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정병국·김우남·김춘진·고승덕·임영호·우제창·양승조·임동규·김용구·김창수·김성수·이상민·정해걸·송영선·임두성·박은수·이윤석·김선동·강명순·김동철·송영길·강운태 의원 발의)(계속)

1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이성헌·이한성·김우남·김정권·안홍준·진성호·송영선·신학용·김성조·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1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이종걸·서갑원·안민석·정영희·이윤석·김재윤·김영록·이인제·김성곤·이용경·조영택·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1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권영진·허원제·권성동·김세연·황우여·박영아·이명규·유재중·안효대·정진석·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124.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유성엽·홍정욱·정장선·이인기·김태환·이달곤·이명규·정영희·정하균·백재현·김정훈·주승용·배은희·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12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철국·김재균·강창일·최규성·문학진·양승조·주승용·김재윤·김유정·박선숙·김창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9163)(계속)

12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철국·주승용·김재균·최규성·김진표·문학진·김성곤·김창수·유선호·김유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9644)(계속)

129.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0.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종근 의원 대표발의)(박종근·유기준·정희수·주호영·안효대·안상수·정해걸·양정례·서청원·유정복·임두성·최연희·최병국·김성수·정태근 의원 발의)(계속)

13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이종혁·서상기·조원진·김성수·노철래·이한성·박보환·김효재·이명규·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135.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6.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김유정·박상천·유정현·조영택·김소남·유선호·임해규·신낙균·노영민·안민석·박영선·강기정·김효석·최인기·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137.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이성헌·이한성·이명수·한선교·임두성·양승조·정해걸·김성수·안홍준·김춘진 의원 발의)(계속)

138.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9.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영진·안민석·김성곤·손범규·이정선·나성린·송광호·조정식·백재현·박지원·김금래 의원 발의)(계속)

(10시28분)

○委員長代理 徐相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손범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9항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이상 13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상정하시고 제가 발언해도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예, 상정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徐相箕 예, 그러시지요.

○안민석 위원 오늘 의사진행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애초에 합의한 일정보다 많이 순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은, 130개 넘는 이 법안들은 대부분 거의 다 미쟁점, 비쟁점 법안을 취합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대체토론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내용들도 많이 중복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바는 여야 위원님들 한 다섯 분 정도씩만 해서, 아니면 여당 위원님들은 좀 더 한두 분 더 하시든지요. 다섯 분이면, 여당이면 다섯 분이면 많네……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조절해서 기존의 숫자보다 한 절반 정도로 비율을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그래야지 오전에 마치고 또 오후에는 현안질의에 들어가서 오늘 현안질의 마무리하고 내일 법안심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대체토론할 법안 중에서 123번이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저희들이 봤는데 일단 좀 다소 쟁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체토론은,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 상정이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쟁점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오늘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할 것임을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셋째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공식적으로 해 주십시오.

몇 차례에 걸쳐서 오늘 오후에 현안질의 중에서 사분위원 관련된 건은 사분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부나 장관께서는 사분위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고 또 답변

이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분위원 쪽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사분위원장을 국회로 모시지 않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사분위원장이 직접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몇 차례 드린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사분위원장의 오후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여야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을 숫자를 정해서 오전에 마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혹시 여당 쪽에서……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김선동 위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시간을 줄여서 한바퀴……

○정두언 위원 저는 빠지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나도……

○委員長代理 徐相箕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당 측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꼭 발언하실 분 몇 분 되시는지 좀……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예.

○주광덕 위원 그걸 꼭 지금, 이 법안이 많이 상정되어 있는데 몇 사람이 질문할 계획이냐라는 걸 지금 할 게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여야 간에 시간을 쿼터(quota)로 주시면 그 안에서 대체토론을 하게 되면 제한된 시간 내에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가능하고 그 조절이 충분히 되니까 시간으로 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그러면 1차 한 5분으로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안민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주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대강 앞으로 한 12시 반 정도까지 2시간이라 그러면 여야가 쿼터라는 걸 한번 적용을 하면, 1시간·1시간 정도 그 내에서 다 조정을 하면 2시간을 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金世淵 委員 위원 수가 차이가 있는데 쿼터가 현실적으로……

○委員長代理 徐相箕 그렇지요, 그건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여튼 그건 제가 소화해서 할 테니까 일단은 5분씩으로 출발하십시다.

○안민석 위원 5분 하면 2시간이면 다 마치나?

○委員長代理 徐相箕 5분 하면 되지요?

○주광덕 위원 예, 5분씩 주면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委員長代理 徐相箕 안 하실 분도 계시니까……

○김상희 위원 예, 안 할 분 있으시니까……

○안민석 위원 그러면 5분으로……

○委員長代理 徐相箕 예, 5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해결됐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안민석 위원 저희 의견만 말씀드린 겁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예,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쟁점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법안도 여기 상정이 많이 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상정하시고 소위에서……

○委員長代理 徐相箕 예, 소위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하십시다. 그건 참고로 해서 소위에서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일단 법안소위 위원들은 오늘 대체토론 안 하면 되지요.

○委員長代理 徐相箕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충분히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 하나만 또 빼기가 그렇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분위 위원장 말씀은 그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하시지요. 여러 가지 복잡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임기 문제도 있고 지금 또 상당히 예민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출석해서 질의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시지요.

교과부 장차관님께 먼저 질의를 하시고 거기 관련되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답이 안 나오고 꼭 사분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났을 때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안민석 위원 지금 오늘 사분위원장님은 안 나온다 그 말씀이지요?

○委員長代理 徐相箕 오늘 일단 한번 질의를 해 보시지요. 관련되는 질의를 하시지요.

○안민석 위원 다음에 시간이 있어야지.

○委員長代理 徐相箕 그러시고 앞으로 또 우리가 계속 3일간 시간이 있으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민석 위원 3일 동안에는 다시 전체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사분위원장을 여기에 직접 출석을 못 시키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니까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徐相箕 아시겠지만 사분위 위원들, 지금 위원장을 비롯해서 임기도 며칠 안 남았고 또 사실상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분위는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독립기관이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아주 예민한 안건들을 다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에 불러 가지고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전에 우리가 사분위 위원장을 출석시키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난 국감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논쟁을 많이 했었는데 모두 공통된 의견들이, 저뿐만 아니고 여당 위원님들이나 정부 측의 의견은 사분위에서는 일단 독립적으로 기관의 성격상 또 구성원들의…… 현직 법관도 계시고 하니까 독립적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사분위 위원장의 국회 출석은 없는 겁니까, 앞으로도?

○委員長代理 徐相箕 아니지요, 그거는……

○안민석 위원 왜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사분위에서 판단하는 데 국회에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사분위의 역할과 기능은 앞으로도 동일할 텐데 앞으로도 그 논리라 그러면 사분위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사분위 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역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분위 위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사분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그러면 당신이, 사분위 위원장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국회 출석하는 데 곤란하다고 하니까 임기 마치기 앞으로 수일 동안에는 어떠한 사분위 결정을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국회로서는 합당한 요청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委員長代理 徐相箕 좋습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더라도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독립성이라든지 또 업무의 연속성 같은 것은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박영아 위원님께서 발언하시지요.

○朴英娥 委員 송파갑 출신 박영아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총리 청문회 때도 그렇고 지난 정기국회 때 사분위 위원장의 위치라든가 법적 지위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분위원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특히 상임위에 출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분위원장 출석요구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여야 간의 이견이 있다면 이것은 간사 간에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이렇게 법안 대체토론을 남겨두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민석 위원 여당 위원님들의 입장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사분위 위원장의 국회 출석은 적절치 않다, 앞으로도 적절치 않다, 사분위 위원의 역할과 기능은 지금하고 앞으로하고 같기 때문에 지금도 사분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출석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그것이 적용된다는 그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만 명확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朴英娥 委員 예.

○안민석 위원 그게 여당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박영아 위원 개인의 입장입니까?

○委員長代理 徐相箕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분위에서 그 절차를 한번……

사분위 담당 국·실장이 누구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저입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사분위에서 결정하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장관 결재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나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사분위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라든지 특별히 잘못된 점이 없는 한 저희 장관의 결재를 받아서 바로 시행하게 되면……

○委員長代理 徐相箕 결재를 하는 절차는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예.

○委員長代理 徐相箕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안민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다음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은 법적으로 한번, 또 규정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야당이 요구한 사분위 관련 보고를, 사분위 위원장이 직접 출석을 하기를 요청한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분위 위원장이 국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에 반대한다, 그 이야기는 또 앞으로도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委員長代理 徐相箕 아니지요. 안건을 심의하는 도중에……

○안민석 위원 아니, 입장을 일관성 있게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徐相箕 도중에……

○안민석 위원 저는 그겁니다. 그 사분위 심의는 일년 내내 하게 되어 있어요. 사분위가 심의하지 않는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조전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면 됩니까? 위원장석 내려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김선동 위원 위원장님, 발언 신청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말씀하세요.

○김선동 위원 사분위 위원장 출석 문제에 대한 여당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그런 위상을 저희들이 존중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르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은 여당 위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사분위 위원장을 부르는 그런 전례가 있었듯이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러면 여야 간에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단정할 것 없이 이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례도 존중해 가면서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안민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분위 위원들의 임기가 다 완료돼 가기 때문에 어떤 고유의 그런 권한 그리고 정책 결정,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은 안민석 간사님께서도 다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강제하는 것은 저희들의 월권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는 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민석 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 요구하고 이 문제를 매듭을 짓겠습니다. 오늘 사분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될 사분위 위원장이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당이 반대해서 오늘 출석이 이루어지지 못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분위 위원장 잔여 임기 동안에는 사분위에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요청을 하는 걸로 다음 진행을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委員長代理 徐相箕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빨리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규 의원, 김학용 의원, 권영진 의원, 안민석 의원, 김진표 의원, 최재성 의원, 정의화 의원, 박보환 의원, 권영길 의원, 서상기 의원, 김영진 의원, 원희목 의원, 이범관 의원, 강기갑 의원, 김춘진 의원, 김동철 의원, 이주영 의원, 조경태 의원, 한선교 의원, 이군현 의원, 양승조 의원, 김상희 의원, 김세연 의원, 임두성 의원, 신낙균 의원, 임해규 의원, 조승수 의원, 이상민 의원, 주승용 의원, 김정훈 의원, 김영우 의원, 이경재 의원, 곽

정숙 의원, 배은희 의원, 임동규 의원, 황우여 의원, 김선동 의원, 유재중 의원, 여상규 의원, 고승덕 의원, 안상수 의원, 김우남 의원, 정두언 의원, 주광덕 의원, 박영아 의원, 진성호 의원, 윤석용 의원, 권택기 의원, 정영희 의원, 홍재형 의원, 김부겸 의원, 박종희 의원, 노영민 의원, 김정 의원, 이성헌 의원, 박종근 의원, 박순자 의원, 김유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11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춘진 의원 저는 제정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委員長代理 徐相箕 좀 기다리세요.

다음은 유성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6항, 제83항, 제91항, 제119항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의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정읍 출신 유성엽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기술은 농업, 공업, 의료, 식품, 환경,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각종 산업분야로의 활용 범위가 무한에 가까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산업 규모 및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 각국은 오래전부터 방사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정 등을 통하여 동 분야에 대한 육성·진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정읍 소재 방사선과학연구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일개 소속 부서의 격에 불과하여 주어진 역할 및 기능, 급증하는 방사선기술 연구·개발 수요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많은 제한과 한계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를 한국방사선과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7만 여명에 이르고 대학 강의의 3분의 1 이상을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시간강사는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임용 기간의 경우도 학기당 계약으로 하는 등 불규칙한 고용으로 신분상의 불안정은 물론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임금과 보험혜택 부실 등 열악한 처우 속에서 매우 힘겹게 강의와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교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강의 또는 학문연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다음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상기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변경되고 교원의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강사의 임용과 신분에 관하여 전임강사에 준해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 임용되는 강사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상기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변경되고 교원의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사립학교에 임용되는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강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본 3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하여 대학 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4건의 개정법률안의 의미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법률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유성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전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시지요.

○조전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인천 남동을 출신 조전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어교육 활성화에 따라서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는 학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거나 영어교육 경험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영어 교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외국인 강사의 연수 의무화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 한국 문화 적응과 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그런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법률안 개정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지고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제2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미리 서면으로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대신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국회 상반기부터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 18대 첫 국정감사 당시 비인가 대안학교 실태조사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마련하고 2009년 홈스쿨링 실태와 해외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마침내 비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을 느슨하게 제도화하는 지금의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정책자료집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인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년가량의 시간이 걸린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법안은 20조 내외로 구성된 비교적 단순한 법안이지만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교육 관련 법령이 담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본 의원은 누누이 언급한 바 있지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은 국민의 권리요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설치하거나 민간이 설치하여 인가받지 못한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시키거나 홈스쿨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인가받은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학교 혹은 집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아예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입법 취지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을 통하여 입시학원과 다름없는 교육을 하면 어쩌나, 아이를 공부시키지는 않고 학대를 하면 어쩌나, 염려하는 부분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은 공교육 밖에 우리나라에 100여 개 이상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홈스쿨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교육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혹은 내용과 다른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 대상이 되기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1998년부터 특성화대안학교, 2000년대 중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의 제도화를 시도했으나, 두 가지 시도의 결과는 너무도 초라합니다.

가장 최근 초·중등교육법 대안학교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제도권 밖 미인가 대안학교 중 제도권으로 들어온 학교는 탈북 학생을 위한 여명학교, 그것도 중등과정의 대안학교가 유일합니다. 이밖에 정부는 대안학교 설치·운영 관련 대령을 개정하여 문턱을 낮추었으나 정책 제도권 내로 들어오기를 바란 미인가 대안학교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한편 미인가 대안학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 밖에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이들과 그 학부모들에게도 공교육 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이 법안의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의 대상을 장관으로 정할 것인지 교육감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 교과부는 아이러니하게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교육복지 대상으로 보고 5, 6년 전부터 재정 지원 사업을 해 온 바 있습니다.

한편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인식이 정부에 비해 너무도 미흡하여 대안교육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감이 아닌 장관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헌법과 일치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본 법안을 저희 상임위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아동 감소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학생수 등 획일적 기준을 잣대 삼아 학교 통폐합을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고, 그 결과 1982년 이후 5400여 개가 넘는 학교가 없어지거나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는 적은 학생수로 인해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 등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과밀화되어 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농어촌 학교, 소규모 학교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는 충남 아산의 거산초등학교, 경북 상주 남부초등학교, 부산 금성초등학교 등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을 만났고,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 법은 농산어촌과 도심 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도입된 교원공모팀 제도라는 것은 기존의 교장공모제가 교장 한 사람의 의지와 역량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 내에서 교장과 교원 간의 비협조로 인해 애초에 의도했던 학교 운영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교원팀 전부를 공모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적해 주신 바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던 내용이며, 입법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부연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도록 교육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첫째, 소규모 학교가 이 법안에 따른 각종 특례를 악용하여 입시형 학교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교육 당국도 충분히 지도 감독이 가능하고, 우리 사회의 감시체계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소규모 학교의 기준이 되는 학생수 120명 또는 6학급인 학교가 강원·전남·전북교육청의 경우 50% 수준이며, 16개 시·도 교육청 평균은 25.5%이므로 이 중 대다수의 소규모 학교가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신청할 경우 이 법안에 따른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가 과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과 교원공모팀 선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소규모 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기 때문에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가 합의과정을 통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소규모 학교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소규모 학교에서 교원을 공모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에는 공모에 참가하는 교원이 많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애초에 입법 준비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외한 것은 승진점수를 얻기 위해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학교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한 열정 있는 교사들의 순수한 마음이 결합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은 헌신과 열정으로 참교육을 실천한 교원들과 공교육에서도 대안학교와 같이 학생이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이 교원팀공모제를 매개로 하여 폐교 위기의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동체학교를 통하여 학교가 살아나 학교가 학교 이상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사회 내에서 함으로써 학교가 속한 마을과 지역이 함께 호흡하며, 소규모 공동체학교가 새로운 공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법안을 저희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이나 소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은 그때 가서 하시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9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娥 議員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출신 박영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원 여러분께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완화하고,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학·연 협력 관계 중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점증하는 학·연 협력 수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교육과학기술위원 여러분!

먼저 본 법안에 대한 취지 및 주요 내용입니다.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촉진될 수 있도록 현재 50%로 과도하게 의무화된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30%로 완화하여 기술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술가치평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며, 지주회사 초기 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일부 영리행위를 인정하는 등 관련 조항들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으로 대학과 연구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학·연 협력관계 중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점증하는 학·연 협력 수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교수와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양쪽 모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이번 임시회에서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여 학·연 협력이 촉진되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박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장관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1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의 결원을 원활하게 보충하기 위하여 근무 예정 지역 또는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공모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폐지되어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법안은 유능한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장자격증이 없이 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장에게 교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연수를 이수한 경우 교장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 겸임교사 등으로서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하여 구축하고, 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과용도서 선정 등과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습자가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 등'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교습비 등'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며, '교습비 등'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법안들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어려운 법률 용어의 한글화·순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당해 법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각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를 감안하시어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6항까지 이상 6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잘 아시겠지만 세 분이 하실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과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의 내용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손범규 의원과 의사일정 2항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가 상거래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대학등록금 납입에 신용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가 대학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금 징수 기일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개시일 이후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대학생이 은행 대출 등을 통하여 등록금을 마련하여 대학에 납입하고 난 이후에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지원을 받아 은행 대출 등을 상환하는 것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등록금 징수 기일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개시일 이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징수 기일 설정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으므로 타당한 등록금 징수 기일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현행법상 교총이 추천하는 자 외에 교원노조에서 추천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교원노조별로 설립연도와 회원 규모 등이 다르다는 점, 개정안은 추천위원의 하한을 2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원노조보다 그 수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각 교원노조 간 추천권 유무와 관련된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천권의 배분 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8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시기인 취학 후 1~2학년 때는 가정에서 학부모의 돌봄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므로 육아휴직 확대로 인한 추가 비용은 사실상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10항 권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이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에 생활기록부·내신성적·수학능력시험 등의 전형 자료를 이용한 총점 산출 공식 및 이에 포함된 가중치 상수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7쪽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2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에 따라 공개 또는 공시된 학교의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고 명령 미이행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13항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영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23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의 급여 산정 기초를 현행 교직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여 직위나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정액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까지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은 장기 재직한 교직원들의 기여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직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서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 검토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권영길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적립금이 과다하게 누적되어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적립금이 과다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일정한 규제를 하는 것을 공통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안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은 해당연도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며, 조경태 의원안은 적립금 누적액이 해당연도 교비회계 운영 수익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21쪽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35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교육기관 등에 지원되는 경비가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화 경비가 부족할 때 그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외교육기관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이에 대한 국고지원이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 부족액을 보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37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측정할 때 유치원의 산정기준에 사립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38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표준교육비로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014년까지 20.72%로 인상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의사일정 46항 임해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년제 외의 제도로서 학점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등학교에서 교과교실제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30쪽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51항입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검정합격도서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비 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관하여는 어떠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 제시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참고하여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53항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직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의사일정 62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의 회원이 학생의 등하교 시 교통지도 활동에 참여하다 입은 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녹색어머니회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자를 교육 참여 활동자로 보아 회원이 교육지도활동 참여 중 입은 사고 등에 대하여 공제회를 통한 보상을 하려는 개정안은 큰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자원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단체보험 가입을 통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검토 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3항 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고 가해·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요청 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며 학부모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64항 임해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의원회가 이사장 및 감사 선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대의원회의 인사·재정 권한을 강화하고 회계감사에서 외부 감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제회 운영의 자율성·자주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66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임직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代理 徐相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113항까지 이상 4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6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8건의 의원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67항 김선동 의원안은 대학의 편입학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등교육법이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동일 대학 졸업자의 편입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이 "다른"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현재도 동일 대학을 졸업한 자가 동일 대학의 다른 학과로 편입하는 학사편입학이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다른"을 삭제하여 학사편입학도 법률에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일반 편입학 및 학사편입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형식이 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중단입니다.

안상수 의원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대학 간호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이러한 간호과를 졸업한 자에 대해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교육과정을 거쳐 동일한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력 차별을 시정하고 교육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우리나라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으며, 동 의안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김춘진 의원안 및 김영진 의원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춘진 의원안 및 김영진 의원안은 산업구조가 전문화·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전문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직업 현장에서 동일한 면허를 취득한 자 사이에 학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는 등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문대학 수업연한의 연장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체계의 전반적인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권영길 의원, 황우여 의원, 박보환 의원, 유성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 의원, 유성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간강사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과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9항 김우남 의원, 의사일정 제80항 임해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또는 설립·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정법안입니다.

고등교육 부문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이 OECD 국가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므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재원 분담을 적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과다한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률을 현재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94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84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와 학교장 등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위탁하도록 하여 동 학교들과 산업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한 전문직업 인재를 양성하려는 동 학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5항 임해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교육 분야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관리·감독 권한을 국무총리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국무총리실로 일원화되어 있는 경제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7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86항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반이 취약한 국내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서관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현

행 도서관법의 대학도서관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8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88항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법규정상 법학대학원은 학생을 특별전형 없이 일반전형 방식으로만 선발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배려하기 위하여 특별전형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사일정 90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립대학의 예산편성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2항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대학과 연구기관 간 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정부의 공공연구 부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산·학·연 협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와의 업무 중복에 대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하 생략하고, 다음은 12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9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1건의 정부제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02항 김부겸 의원안은 학원의 불법 교습에 대한 강력한 단속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성을 확보하고 서민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으로는 신고포상금제를 법률화하고 시도 조례로 수강료의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는 등 학원의 불법 교습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권영길 의원안 역시 동일한 취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4항 이상민 의원안입니다.

이상민 의원안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가까운 곳에 설치할 수 없는 유해업소의 종류와 이러한 제한을 가하는 구역의 범위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있어 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5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의원안은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사항 또는 교습소·개인 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 중 학원의 위치 등을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전혁 의원안은 외국인 강사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강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춘진 의원안은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범위에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진학지도학원으로 새로 정의하고 교육감이 수강료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정부안은 학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공동관리시설에서 비영리로 운영하는 시설을 학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수강료 외에 교재비 등의 경비를 포함한 교습비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 학원별로 등록된 교습비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12항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113항 안민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대학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원 학교에 전공대학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代理 徐相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4항부터 제139항까지 이상 2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원 배부해 드린 요약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하단부, 의사일정 제116항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규 국가 R&D 사업에 대해 국과위가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실시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타 제도가 국과위 핵심기능인 R&D 예산의 분배·조정·평가 등 전주기적 관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고 이전 참여정부에서 국과위가 순수 R&D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모두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사전타당성조사를 국과위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국가재정법에서 예타조사가 기재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법체계상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예타와 중복 또는 충돌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의사일정 제118항 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비를 당초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환수에 더하여 그렇게 사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연구개발 사업예산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 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 현행 규정만으로는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사업비 유용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 마련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외 사용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도보다는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타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그 법안의 개정추이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9항, 제121항 유성엽 의원과 김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과기정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연구원의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를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독립 법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페이지 중간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 내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 내 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 방향이 설정된 이후 이를 종합 검토하여 독립 법인화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의사일정 제127항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출처를 기재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기재가 안 된 경우에는 평가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출처를 기재하도록 하여 왔으나 출처 기재율이 53.6%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법률로써 출처 기재의무를 부여하려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의사일정 제136항 김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물체 발사사업으로 인한 조업통제 등으로 어업피해를 입은 자를 보상하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공용제한 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와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피해보상 규정을 감안할 때 나로우주센터 인근에서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출입통제로 발생한 어업상 피해를 보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업제한에 따른 어업상 피해손실액의 입증과 입법 형식 등을 수산업법과 연계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단부, 의사일정 제139항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방사성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 및 신약 개발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성동위원소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지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으로 가능하고,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및 안전관리는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식약청 소관이므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이 법안은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의사일정 114항, 122항, 125항, 126항, 129항, 130항, 132항, 133항, 135항, 138항 이상 10건의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代理 徐相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정부가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의안번호 9839)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장관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이번에 비쟁점 법안만 상정하자고 그랬는데 이건 비쟁점 법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은 검정교과서 취소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교과위에서 여야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불러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생각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법안 취지대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길 위원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사소위 때 다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권영길 위원 두 번째, 검정도서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교과서를 편찬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교과서에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권영길 위원 그런데 정부의 법안은 교과부장관이 검정 취소에 대한 절대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교과서에 대한 검열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 법안의 취지가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으로 올리고 이런 절차상의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의 법률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길 위원 어쨌든 취소에 대한 절대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건 맞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권영길 위원 이 부분도 다시 심사소위 때 다루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권영길 위원 세 번째,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우려스러운 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파동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역사교과서, 경제교과서, 사회교과서를 두고 여러 정치세력이 이념적인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정도서 체계를 둔 것인데 오히려 이 체계를 무너뜨린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말씀드린 대로 취지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취지입니다.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신데요. 정부가 이 법을 낼 때는 그 취지에 충실하게 입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지적한 부분은 법안심사소위 때 구체적으로 더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장관님, 고등교육법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 먼저 이게 지금 현행 시행하는 학교들도 많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주광덕 위원 지금 두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 내용은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납부한 학생한테 수수료를 전가시킬 수 없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주광덕 위원 현행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받는 학교들이 꽤 많은데, 그 경우에는 지금 법적 근거가 뭡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보면 거기에 등록금 징수하는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는 지금 두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 내용을 담아 낼 수는 없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게 기본적으로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수수료 문제가 선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교육부령으로는 담아 낼 수 없는 거냐고요. 없으면 당연히 법 제정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법령으로도 부령으로도 가능한데 교육부에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에서는 법률을 개정할 수는 있지만 영을 국회는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는 거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 부분은……

○주광덕 위원 법적인 판단으로 교육부령으로도 가능한 건데 교육부에서는 직접 나서서 여기까지는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냐, 아니면 부령으로는 담아 낼 수 없고 입법사항으로만 가능한 거냐 제가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담당자가 잠깐……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관 송기동 고등교육법에……

대학지원관입니다.

○주광덕 위원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꼭 입법을 해야만 되는 건지……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관 송기동 입법을 안 해도 지금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광덕 위원 아니, 자율로 안 하는 걸 지금 의무적으로 하게 하려는 게 법안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는 굳이 법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기본적인 법을 만드는 원칙이.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관 송기동 징수 방법하고 징수 시기 이런 것은 영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영으로도 대학에다가 의무를 줄 수 있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런데 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하고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부 입장은……

○주광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걸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아직 그게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주광덕 위원 그러면 소위에서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거지요. 부령으로도 가능한데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까지도 하는 것은 대학의 어떤 자율성이나 등록금에 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안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기 때문에 법안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입법기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두 번째로는 제가 발의한 내용인데 법학전문대학원 개정안, 장관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선발할 때…… 장관님, 그거 보실 필요 없이 지금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을 처음으로 인가를 내줄 때 배점을 줬지 않습니까, 서로 모든 대학에서 이걸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전형을 학생 전체의 5% 이상 하게 되면 그 해당점수에 만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법학

전문대학원을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특별전형을 100명이면 최소한 5명 이상은 해야만 점수를,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립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해서 이거 법안을 낸 것은 운영 과정에서는 이 5%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법에는 꼭 특별전형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최소한 5%는 입학하는 게 맞고 각 대학에서 설립 당시에 그런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법으로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하면 특별전형을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설립 인가를 한 정신, 그 취지에 이게 부합된다고 보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주광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그냥 질문하고 조금만……

○委員長代理 徐相箕 예.

○주광덕 위원 지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안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주광덕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학교 현장을 위해서는 3월에 개학하기 이전에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아까 장관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4대 교육비 문제 그런 것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하고 우리 학교 NEIS라는 망하고 연결해서 하면 낙인효과를 예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법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지금 학기가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서를 이미 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지금 별도로 온라인시스템을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현장에서 신학기 들어서 서면으로 신청서를 해당 학생이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이런 사례는 지금 없는 거네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건 없게 됐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좀 더 그런 것을 시스템으로, 법적인 제도로 확실하게 하고자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정 위원 민주당 김유정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하실 때도 나왔지만 제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낸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님께서 나로우주센터 인근의 나로도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시거나 관련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유정 위원 언제 들으셨어요? 보고는 받으셨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몇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교육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라서, 그때 당시 제 담당 소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정 위원 그래서 사실은 나로호가 천문학적인 숫자 들여서 1·2차 두 번 다 실패를 했고요. 3차 발사는 언제쯤, 내년쯤 진행이 됩니까? 언제 진행이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직까지 확정은 된 바가 없습니다.

○김유정 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어민들이 피해가 상당히 막심한 것 같아요. 우주센터 만들 당시부터 또 1·2차 발사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어민의 대표들이 한 이백열여덟 분 정도 되시는데 주로 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나 피해 호소도 하시고 또 민원도 내시고 했는데, 답변이 그때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입증이 되면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형 국책사업이고 발사가 순조롭게 되는 데 협조한 어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피해보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근거규정이 없다는 얘기에 앞서서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구두약속을 반복적으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무부처인 교과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더 큰 문제는 어민들이 3차 발사 몸으로 막아서라도 저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좀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선박을 동원하고 죽음을 불사하겠다, 각오하겠다 이러면서……

(서상기 간사, 안민석 간사와 사회교대)

국민들을 위해서 피해보상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로호 발사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지금 막대한 피해의식과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굉장히 비등해 있는 상황인 거 같아서 제가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는데요.

근거규정도 근거규정이지만 헌법상, 헌법 23조에도 이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근거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보상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권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게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차제에 이 법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고받으시고 그 이래로 지금 교과부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말씀주신 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을 우주개발진흥법으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만 교과부 입장에서는 조업 통제로 인한 손실 보상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앞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정 위원 관계 부처하고 당연히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법이 있으면 그런 근거규정이 되는 것인데 왜 보상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제 말씀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순진한 어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행태를 몇 년 동안 보여 왔다는 것에 다름없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것 같은데 그 수산업법 말씀하시면 그런 근거 규정이 당초에 있었으면 그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고 그런 문제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 말씀은 수산업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유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시에 고려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이 어민들을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같이 협력해서 천문학적인 숫자 들여서 국책사업으로 발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1, 2차 실패하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피해 당사자인 어민들의 고충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차제에 교과부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민석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좋은 소식을 공지를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나라당 임해규 위원님께서 지난달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문적인 식견으로 상임위 활동을 아주 탁월하게 하셨지만 이제 박사가 되셨으니까 더 탁월하고 모범적인, 전문적인 그런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상임위 전체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성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성엽 위원 유성엽 위원입니다.

우리 임해규 위원님 축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먼저 아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법률안 관련해서 말이지요. 저도 독립을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었고 아마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께서도 내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정부 내 출연연구기관 구조 개편 방향이 설정된 이후에 검토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를 아까 들었어요.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출연연구기관 구조 개편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

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러면 구조 개편 방향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국과위 출범과 관련되기 이전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국과위 출범과 관련이 된 사항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죽 출연연 개편이나 선진화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TF팀은 국과위 개편 논의 이후에 아마 이렇게 구성된 걸로, 부처 간의 협의체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러면 언제쯤 개편 방향이 확정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출연연 선진화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연구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라서 현장의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더군다나 국과위까지 출범하는 계기를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기에 관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끌다 보면 더 불안정성을 가속시킬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계기가 왔을 때 그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들고 어떤 조속한 방향 확정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저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연구소들의 구체적인 승격 문제, 독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다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에서 제출하셨는데 그 내용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고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에 대한 문제하고 대학교 학교법인에 대한 문제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말이지요, 왜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초·중등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기존에도 일몰제로 해서 이렇게 한번 시행이 된 바가 있고요. 또 규모가 아무래도 소규모이다 보니까 재산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어떻든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도 설립자나 출연자한테 다시 재산을 해산 시에 되돌려주는 것은 공공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냈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난번에 한시법으로 하면서 그래도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일몰기한이 지나서 다시 한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어떻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보면 학교 교장공모제에 관해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지금 법적 근거가 사실 취약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좀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성엽 위원 특히 그중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교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는 지금까지는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지금 내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교장 자격증을 갖는 사람에 한해서만 교장을 하도록 한다 해서 개정법률안을 내셨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내부도 허용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세 가지 유형

이 다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금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장 자격증을 가져야만 되는 걸로 개정안이 되는 것은 교장공모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군현 의원께서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평생교육시설을 법인이 아닌 자에게도 승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사람이 7년 이내에 어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법인이 아닌 개인한테 평생교육시설이 승계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이런 규정,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지금 개인에게 지위 승계는 일단 수용하는 걸로 저희 입장이 정해졌습니다만……

○유성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도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실태를 들어보거나 판단해 보면 대단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공식적인 법인이 아닌 개인한테 주어서 한 7년 정도 여유를 둔다는 것은 자칫하면 이것이 부적 법안, 부적격한 운영으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충분한 의견을, 교과부가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제가 우려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문제가 없겠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소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면 현재 '학교발전기금을 폐지를 하자'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내용으로 이런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말이지요, 혹시라도 우리 지금 학교에 여러 가지 학교급식이라든지 학교d[납품 또는 학교의 수학여행 등과 관련해 가지고 부정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혹시 그것과 관련된, 이렇게 기부제도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납품이라든지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과부가 교육 현장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TF팀까지 구성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죽 검토하고 또 많은 부분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의 비리는 비리대로 해결해 가면서 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안민석 예.

○유성엽 위원 지금 김춘진 의원님하고 김영진 의원님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전문대학교 수업연한 그것은 3년 또는 4년까지 이렇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공청회도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간호학제 일원화 문제 그것하고 이게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 입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화 과정을 활용해서 그런 욕구들을 점진적으로 수용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유성엽 위원 현재 기존 4년제 대학도 지금 학생 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을 4년제로 수업연한을, 대통령령에서 허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학위를 인정해 주다 보면 기존의 4년제 대학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4년제로 허용하기보다는 전문심화과정이 있어서 2년하고 현장에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2년을 더 하면 학위를 받는 제도가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학위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민석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선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서울 도봉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먼저 김세연 의원께서 아주 좋은 문제의식으로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환율이 인상되면 원화예산이 부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장관님 무슨 법안인지 아시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선동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김세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포함해서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장관님 전문적인 분야라서, 환헤지라는 개념은 혹시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세계 주요국에 보면 이렇게 환차손이 발생을 해서 자국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이것을 메워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국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고민하지 말고 들어만 주세요. 제가 문제제기만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보면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법제화해서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자국통화인 마르크화가 아닌 유로화를 통해서 환차손의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대책 등 여러 가지 각국에서 이런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부 같은 경우에는 재외 한인교육기관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관련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정부의 전체 예산 중에 교과부 예산의 비율은 아주 미미합니다만 저희들이 꼭 해야 될 부분에서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외국의 사례들을 좀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되도록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전에라도 혹시 교과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방식을 통해서 우리 한화와 달러 이런 것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런 환율 변동에 의한 예산 부족이 없도록 대비하는 방법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두 번째로요, 우리 김상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녹색어머니회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현재는 비영리 민간단체직영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소속 등록단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교과부 관련 등록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법안의 내용은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가입 또는 공제회 가입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선동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녹색어머니회가 교육활동 참여자라는 기준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지적하신 그 취지에 동감하고요. 다만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든지 또 학교장이 승인한 활동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김선동 위원 그래서 우선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교통안전 문제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다가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셔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김선동 위원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의 돈이 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마 교과부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선동 위원 그다음에 김유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나로호 발사를 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익적인 사업 문제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과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이것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현행법상에도 헌법에도 그렇고 수산업법에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근거규정을 잘 살피셔서 고흥 쪽에 있는 어민들 피해가 없도록 적절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민석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해규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김영진 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7개의 법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교원미임용자 문제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폐교된 학교가 굉장히 많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보면 무려 3400여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되는데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718개, 경북이 608개, 경남이 510개, 강원 406개, 주로 농어촌 쪽에 집중되어 있고 또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가 빚 그다음에 교육여건 열악, 그다음에 문화·복지 소외 이런 것 때문에 농촌을 떠나고 있는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이 장관께서 부임하신 후로 현장을 많이 다니시던데 농산어촌 쪽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단과 처방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하는 데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 예가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 농어촌에 대한 특별지원 이런 문제로 처방을 하고 계신데 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촌학교 활성화 실태와 그 시사점에 보면 혁신을 주도할 교양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농촌 교육에 열정을 발휘하는 교사가 많지 않다,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지요. 농촌형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돌봄 기능이 가미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적극적으로 처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교육관련 보고서는 보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학생들로 북적이던 농어촌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렸고 또 거기에 적극적인 정부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말씀 주신 대부분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 사실 또 교육청별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교육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한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안에 몇 가지 그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하셔서 이 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농어촌의 사양화되고 있는 교육이 활성화로 새로운 힘을 되찾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관심과 처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다만 이제 이게 개별법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법제화하는 것이라서 저희의 입장은 법제화하기보다는 그냥 이미 추진되는 그런 정책들을 강화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진 위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농림부에서 지원 문제가 부족해 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교육부에서 보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다음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문제입니다.

국민의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가 국방의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덕목이지요. 그렇다면 국민의 의무를 다한 성실한 국민이 의무를 이행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 이것은 좀 모순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번 이미 법제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미 특별채용……

○김영진 위원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일부분은 해소됐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해소됐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몇 분 되지 않은 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분들은 부적격으로 결정을 받은 분들이라서 이것을 법제화를 통해서 또다시 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별로, 시간 때문에 지금 일일이 따질 수는 없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누가 책임 있는 분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어떤 의도적인 게 아니고 선의의 피해자들로 구분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하고 있는 개정법률안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일리 있는 부분은 구제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민석 감사합니다.

오전 마지막 순서로,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시지요?

오전 마지막 순서로 방금 막 교육학박사를 받으신 임해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하고 또 김우남 의원님도 같이 발의하셔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2개인데요.

제가 OECD 국가 GDP 대비 교육단계별 교육비 구성한 것을 보니까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통계상으로는 GDP 대비 전체 교육비가 우리나라가 7.0으로 2위고 미국이 7.6으로 1위입니다. 그런데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사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고등교육 진학률이 대단히, 취학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점이 또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부담률을 높이는 데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우리가 공부담이 0.6%잖아요, 그런데 OECD 평균은 1.0이고. 그러니까 0.6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OECD 국가에서 이탈리아 일본 정도가 그렇고 나머지는 다 1.0은 좀 넘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잘한다 하는 나라들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교육 진학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치가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민간 부담이 높아도 너무 높은, 그야말로 가계의 부담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결 방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다한 고등교육 진학이 되지 않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취하는 게 있을 테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줄인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추세가 고등교육 진학률이 6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인다 하더라도 10% 이상 줄이기

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정부 공부담률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의지를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ICL 제도를 도입해서 어쨌든 부모들의 소득으로부터 학생들의 미래 소득으로 부담을 분산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부담의 분산 문제일 거라고 보고 부담의 완화는 역시 정부가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임해규 위원 장관님, 동의하시리라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이런 현상 해결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전체적으로 고등교육 쪽에 정부 지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제 18대 국회는 1년밖에 남지 않고 대통령 임기는 2년 남았는데요. 저는 이명박 정부가 올 연말에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또 한번 세울 기회가 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임해규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가 고등교육법에도 연차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높이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지금 나와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게 목표치가 있으실 테니까 저는 그것을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세부내용은 기재부랑 또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목표를 1.1%, GDP의 1.1%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높이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몇 년 만에 그것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꼭 1.1%로 해야 되느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정하더라도 저는 이명박 정부 내에 제도적이고 구조적으로 교부금이라는 형태로 교부할 수 있으면 큰 성과가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공의 책무다 하는 구조를 갖게 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의지가 어떠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또 1%든 1.1%든 타깃을 가지고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교부금 체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생의 수가 한 3분의 1까지 5~6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격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시기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체제로 하는 균등지원 체제보다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동결에 많은 대학들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교육역량강화사업을 2배로 늘리겠다 하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역량강화사업을 2배로만 늘려도 상당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의 구조조정과 대학의 지원이 같이 갈 수 있는 체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구조를, 그러니까 고등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획기적이라는 게 물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높이는 거지요, 한꺼번에 높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저는 이 법안에서 교부를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조건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다 준다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해서 안정적인 일정한 지원을 하는 구조적인 장치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해서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좀 열심히…… 그냥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의 구조를 우리가 새롭게 갖는 것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교과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역대 교육 쪽을 맡은 장관님들이 다 그것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것은 국민의 정부 때나 참여정부 때나 어쨌든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경쟁의 원리로 하고 자부담 원칙으로 해야지 정부가 안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극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위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민석 감사합니다.

○권영진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민석 예, 자료 제출……

○권영진 위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과부장관님께서, 올라온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법들 보면 교과부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권영진 위원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만드는 문제 그다음 제가 발의해서 유아교육의 재정을 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간호학과 4년제로 만드는 문제도 지금 간호원의 정수와 TO 문제나 간호 인력난의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통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당장 이것을 4년제로 늘려 놓으면 1년 정도는 간호 인력난이 또 초래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4년제로 가면서도 그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 이 부분도, 이 법들이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안심사소위 논의할 때 다른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그 부서의 입장과 현황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민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에서 김영진·김유정·배은희·안민석·김춘진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재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40. 현안보고(계속)

가. 2010년도 교과위 소관 법안 직권상정 관련

나. 경기·강원 6개 도시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

다. 사분위 임시이사 파견대학 정상화 현황 관련

라. 대학생 등록금 대책 관련

마. 영림중·호반초 내부형공모 교장 임용제청 거부 관련

○위원장 변재일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40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 보고는 2010년도 교과위 소관 법안 직권상정 관련사항, 경기도와 강원도 6개 도시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사항, 사분위 임시이사 파견대학 정상화 현황 관련사항, 대학생 등록금 대책 관련사항, 영림중학교·호반초등학교 내부형 공모 교장 임용 제청 거부 관련사항 등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주호 장관께서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여야 간사 간에 현안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그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직접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2차관님, 2차관님은 직권상정 어떻게 아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저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안민석 위원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제 기억으로 오전이고요, 왜냐하면……

○안민석 위원 됐어요, 오전이고.

1차관님, 1차관님은 직권상정된 거 어떻게 아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TV에서 그 내용……

○안민석 위원 언제 아셨어요? 언제 보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그 의안이 상정되어 있다는 것은 오전에 알았습니다.

○안민석 위원 어떤 TV에서 보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TV에서 보고 확인해 가지고 우리 비서관한테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비서관한테 이야기 들은 거지요. TV를 보고 아신 게 아니지요.

어느 비서관입니까? 그 비서관 일어나 보세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1차관께 TV에서 직권상정 보도된 것 보고드렸나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실비서관 최성부 예.

○안민석 위원 맞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실비서관 최성부 예

○안민석 위원 그 TV 어디서 봤어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실비서관 최성부 사무실에서……

○안민석 위원 어디 있는 사무실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실비서관 최성부 광화문 청사에 있는 거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거 했다 그래 가지고……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TV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봤고……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실비서관 최성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고요, TV도……

○안민석 위원 인터넷에서 본 것을 갖다가 TV에서 나왔다고 1차관한테 이야기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실비서관 최성부 아니, 그것은 TV를 봤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지금 인터넷 보셨다면서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실비서관 최성부 처음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게 됐다는 걸 보고요, 그래서 TV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도 보고 좀 이따가 TV도 봤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실비서관 최성부 예.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설 차관께 이야기 안 하고 TV 본 것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실비서관 최성부 예.

○안민석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실비서관 최성부 예.

○안민석 위원 연락관, 국회 연락관 누구입니까?

국회 연락관, 여기 나와 보세요.

12월 8일 날 당시 연락관이셨나요?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한 법무담당관입니다.

연락관은 지금 사무관이 하고 있는데요.

○안민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연락관 나오라 그랬지 공무담당관 나오랬습니까?

연락관 어디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한 지금 여기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국회 연락관 어디 가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한 바깥에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국회 연락관, 이거 TV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국회 연락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한 정오채 사무관입니다.

○안민석 위원 정오채 사무관님, 어디 계세요?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한 바깥에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밖에 계신가요?

아니,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고 장관이 나와 있는데 연락관이 잠적돼 있어요? 이게 교과부입니까?

그런데 연락관 나오라는데 왜 나오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한 잠시 없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연락관이 없어서 나오는 대타입니까, 그렇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한 법무담당관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안민석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한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안민석 위원 무슨 주무 과장인데요?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한 법무담당관입니다.

○안민석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한 법무담당관입니다. 국회담당 과장입니다.

○안민석 위원 국회 연락관은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연락관의 직속상관입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과장은 이거 직권상정된 거 어떻게 아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한 연락관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연락관한테 들었다……

연락관 빨리 찾아와 보세요.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한 알

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연락관, 서 보세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직권상정된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오채 오전에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안민석 위원 TV를 보고?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오채 예, 그날 예산도 같이 반영되고 그러는 저기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와 있었을 때 그때 봤습니다.

○안민석 위원 TV를 보고 알아서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오채 그때 저희 과에다가 연락을 했지요, 상정이 됐다고.

○안민석 위원 과 누구한테 연락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오채 글쎄요, 저희들이 그냥 과로 연락했기 때문에 누가 받았는지는 기억은 안 나고요, 과로 연락……

○안민석 위원 아니, 이 중대한 사실을 누가 받았는지 기억 안 납니까? 아무한테나 이야기했습니까?

연락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오채 지금 직권상정, TV에서 본 내용 봤느냐 그것을 연락을 했고……

○안민석 위원 누구한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오채 예,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민석 위원 이게 그냥 기억 안 날 사항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오채 제가 국회에 와 있으면서 그런 상황은 국회에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안민석 위원 혹시 과장 아니었어요?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오채 글쎄, 과장님인지는……

○안민석 위원 아니, 과장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오채 그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안민석 위원 과장은 연락관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년 전의 일을 제가 묻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오채 제가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안민석 위원 아니, 갑자기 물어도…… 그러면 갑자기 묻는다고 연락관님 몇 년생인지 기억 안 나세요?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오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안민석 위원 갑자기 묻는다고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기억 안 납니까? 갑자기 묻는다고 와이프, 부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까?

갑자기 물어서 헷갈릴 게 있고 당황할 게 있고 까먹을 게 있는 거지요. 이 엄청난 사건을 연락관이 본청에 알릴 책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누구한테 알려야 되겠다고 수화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무작정 수화기 들고서 받는 사람한테 상황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오채 저희는 제가 국회에 나와 있으면서 국회의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걸면 그 전화 받는 분한테 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았는지……

○안민석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나와 보세요.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예, 기조실장입니다.

○안민석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TV 보고 있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TV 보고 알았어요?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TV를 YTN을 저는 계속 소리 없이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안민석 위원 그게 오전인지 오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예, 기억 안 납니다.

○안민석 위원 기억이 안 나고, 차관님은 오전에 받으셨다고 하고……

그러면 TV를 봤습니다, 실장님이. TV를 봤으면 보고를 했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보고한 기억은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이 중요한 쟁점법안이 직권상정이 되는데 그것을 실장이 TV에서 봤다, 그런데 보고서 혼자만 감추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감춘다기보다는 TV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다들 TV 정도는 보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일을 그렇게 처리하세요, 실장님은? 본인이 판단해서, 이거는 보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거는 판단을 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예.

○안민석 위원 그런데 이 건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보고를 안 한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예, 이 건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예.

○안민석 위원 이게 그렇게 보고할 필요가 없을 만큼 대수롭지 않은 문제였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 당시에 상당히 예산통과 이런 것 때문에……

○안민석 위원 그 TV를 어디서 봤어요?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안민석 위원 어디 사무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제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 사무실에서 혼자 봤어요?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예, 저 혼자 봤습니다.

○안민석 위원 혼자 봤어요?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예.

○안민석 위원 혼자 보고서 그것을 본인만 알고 있었다,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김차동 제가 혼자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안민석 위원 그다음에……

됐습니다. 사실만 지금 물으면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1차관님께서는 아까 누구한테 보고받았다고 그러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제 비서관한테서 받았습니다.

○안민석 위원 비서관한테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예.

○안민석 위원 그러면 비서관은 인터넷 보고서, 연락을 받으셨는데 실장이나 아니면 주무담당 과장한테서는 보고를 전혀 안 받았다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예.

○안민석 위원 2차관은 보고를 안 받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지요, TV 보고 알았으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저도 보고 안 받았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차관은 보고 체계가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저도 물론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데 1차관은, 서울대 법안은 1차관 소관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 법안 직권상정된 것은 1차관은 보고를 어쨌거나 비서관한테 받았는데 2차관은 비서관이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그때……

비서관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데 2차관 비서관은 보고를 안 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아니요, 저희 사무실이 트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TV를 보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서 사실은 저도 이미 알고 있다는……

○안민석 위원 1차관하고 2차관 사무실 구조가 틀립니까, 틀려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틀립니다, 저희 방 구조가……

○안민석 위원 그러면 비서관이랑 같이 TV 보고 있었나요? 그때 누구랑 같이 보고 있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저는 계속 하여간 보고를 받고 있었고, 저는 TV는 항상 켜놓기 때문에……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TV를 봐서 딴 방에 있는 비서관이 보고할 필요가 없어

서 보고를 안 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예.

○안민석 위원 그러면 1차관은 TV를 안 보고 있어서 그래서 보고를 따로 받았던 거고……

그런데 정부종합청사 1차관하고 2차관하고 건물이 틀린 데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다른 업무를 저는……

○안민석 위원 다른 업무라니요? 그날이 직권상정되는 걸로 전국에 초미의 관심이 모여져 있는 건데 1차관은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다른 업무를……

○안민석 위원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일단 사실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광덕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시네요.

○주광덕 위원 저예요?

○위원장 변재일 예.

○주광덕 위원 박보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변재일 여기 질의서가 그렇게 왔는데?

○주광덕 위원 지금 방금 와 가지고, 질의서가.

○위원장 변재일 그러면 박보환 위원님하고 바꾸시지요.

○주광덕 위원 예, 박보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보환 위원 경기도 화성을의 박보환입니다.

교과부에서 등록금 대책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학생·학부모들의 체감온도는 역시 영하권이라고 보는데요.

장관님, 올해 가장 비싼 등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학교의 어느 계열이 제일 비싼 등록금인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보환 위원 고려대 어학계열이 한 1270만 원, 연세대 인문계열이, 인문계열 중에서는 연세대가 한 830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팔아서 대학 간다는 우골탑 시대는 이미 끝났고 집팔아서 대학 가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장관께서 지난 1월 달이지요, 각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을 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박보환 위원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을 했는데요. 이번 학기에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이 총 몇 개 정도, 몇 % 정도 되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170개 대학 정도 됩니다.

○박보환 위원 그러면 거의 한 반 정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반 정도……

○박보환 위원 매년 정부가 대학들에 호소해서 등록금 동결하고 있고, 사실 지난 2009년도부터는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등록금 자체가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제는 단순히 인상률이 낮다는 것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동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현재의 등록금 자체가 적정한 것이냐를 한번 분석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등록금인상위원회지요, 아니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심의위원회……

○박보환 위원 유명무실하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했었는데 그나마 전국 대학의 절반 정도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요. 명확한 규제가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현재는 다 설치를……

○박보환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현재는 다 설치를 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박보환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박보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대학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교과부에서 감독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다 설치되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매년 카드결제 대학 현황자료를 교과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올해 1학기 등록금 카드수납 현황을 보니까 전체 대학의 한 24% 남짓 카드결제로 등록금을 수납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한

18.4%, 1년 동안에 한 5.5% 남짓 늘어났거든요.

한 번에 한 사오백만 원 하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바로 결제하기가 쉬운 그런 학생·학부모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카드수납을 의무화하는 입법 발의까지 지금 된 상태인데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유도해서 할 수는 없는지, 앞으로 이에 대한 정부정책이 어떤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카드납부에 대해서는 계속 정책적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보환 위원 하여튼 앞으로 법제화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과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보환 위원 든든장학금 관련해서……

장관님, 든든장학금 제도가 참 좋다고, 좋은 제도라고 하는 학생·학부모가 몇 % 될까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직까지 이자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보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자율도 거의 한 5% 가까이 되고요, 또 학점·소득분위 등 각종 자격제한도 여전한데, 또 그리고 군복무기간 이자, 복리 이자 문제도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1학기 대출실적을 보니까요, 전체 대출 학생들 중에서 든든장학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전체의 한 절반이 안 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직 절반 안 됩니다.

○박보환 위원 절반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럴까요?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서 든든장학금 제도가 별 장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절반은 안 됩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 대출금 중에 든든학자금 차상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위원 그래도 증가한다손 치더라도 완만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박보환 위원 대출이자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 이상, 현 정부의 야심작인데, 든든장학금이 결코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학생·학부모들이 '이것이 장학금도 아니고 학자금대출인데 꼭 신청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각종 대출자격 기준도 좀 없애고 최소 금리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출이자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는데요. 장관께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출이자 낮추는 데는 장관님 의지가 확실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남은 방안이 장학재단 기채가 아니고 국채로 하는 방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련부처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위원 국채 발행도 그렇고, B학점 기준 완화…… C학점으로 하니까 거의 배제되는 학생이 한 8~9%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박보환 위원 그렇다면 굳이 C학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한 8~9%를 걸러내기 위해서 과연 C학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추천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입을 해서 억울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구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위원 그다음에 또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이것도 검토하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위원 그다음에 상환 기간 달리 적용하고 소득분위 제한 폐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박보환 위원 소득분위 제한 폐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역시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시급하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위원 장관님, 이번 기회에 학자금 문제 해결 이 부분을 교과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계속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의 여지는 아직 많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보환 위원 장관님, 그리고 내부형 공모제 언론에 좀 많이 났었는데요. 서울 영림중학교하고 강원도 호반초의 경우에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이유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 개인의 결격사유입니까, 아니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보환 위원 그런 경우에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일단 저희가 임용제청을 거부했고요, 다시 절차를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박보환 위원 어쨌든 후속조치로서는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임용하거나 재공모하는 건데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그동안에 시·도 교육청의 법령 준수를 시정 권고하지는 않았고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으로 한다' 해서 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보는데요. 이거 좀 명쾌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이 경우에 지정취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또 교육감께서 지정을 하면 계속 그 절차가 지연되고 반복적으로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공문을 통해 가지고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공문을 내려 보내고 교육청과 협의를 최대한 해서 현장의 갈등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위원 지금 서울교육청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재공모할 방침이라고 그러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보환 위원 지금 학기가 시작해서 한참 지났는데 이거 언제 재공모해서 학교 교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도 그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위원 하여튼 내부형 교장공모제, 교과부에서 잘 관리감독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김상희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장관님께 여쭈어 봤는데요. TV를 보고 직권상정된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TV를 언제 보고 알게 되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김상희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TV를 언제 봤는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요, 정확하게……

○김상희 위원 그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기억이 안 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지금 4개 법안 날치기뿐만 아니라 예산도 있고 이 날은 장관님들이 다 국회를, 공무원들이 전부 국회를 주시하고 있는 날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정확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상희 위원 17대 때 사립학교법이 직권상정됐을 때 장관님께서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글쎄요,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굉장히 분노하셨지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것은 제가……

○김상희 위원 말씀해 보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분노하셔서 비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비판하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글쎄……

○김상희 위원 의회주의가 처참하게 유린되는 그런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셨지

요? 그것도 기억 안 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정확하게……

○김상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별로 주시도 하지 않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고 사전에 연락도 못 받았고, 그러면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4개 법안이 날치기 됐는데요, 그러면 교과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법안이 일단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법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날 교과부에서 회의를 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상희 위원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그날 날치기의 핵심이 교과부 법안은 4개 법안 플러스 지금 방사광 가속기 예산이 포함돼서 예산도 날치기 됐지 않습니까? 예산안 심의할 때 우리 차관님께서 끝까지 집착했던 예산이 이 방사광 가속기 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다시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입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검토조차도 제대로 안 됐던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예비타당성조사를 다 거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 없는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입지 관련해서도 전혀 검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프로세스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2차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님이 말씀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보고 못 받았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교과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 날치기를 통해서 이 가속기 예산하고 4개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날아간 예산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큰 예산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대학 재단 예산……

○김상희 위원 대학생 등록금 예산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예산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지금 대학생 등록금이 말이지요 신용불량자가 2007년도에 비해서 지금 몇 배로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김상희 위원 2007년도 몇 명이었습니까, 신용불량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도대체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장관님? 대학등록금은 모든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도대체 장관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 교과부도 등록금 문제는……

○김상희 위원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신용불량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잠깐만요.

○김상희 위원 시간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785명에 비해서 2010년 7월 2만 4916명, 6.6배로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취임 때도 2010년도에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 미집행한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장관의 직을 걸고 이것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가속기 예산 따고 이 법안만 날치기하면 그다음에는 장관님이 해야 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이행해야 될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을 교과부에서도 그렇게까지 약속을 한 사안이니까 이것 예산 책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2010년도에 미집행한 것을 확보해서, 이 학생들이 그대로 다 지금 신용불량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라고 했는데 이거 그대로 지금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장학금 이번 1학기로 끝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지금 ICL 가지고 이 차상위계층

의 학생들 문제 해결 됩니까? ICL 지난번에 몇 %입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몇 % 지금 이용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한 30% 정도 됩니다.

○김상희 위원 26% 이용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그렇지요? 차상위계층 이걸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ICL 채권 대납이자 지원 부분 2010년도 3011억에서 지금 2011년도 1117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ICL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 부분은 워낙 과대추계된 부분이……

○김상희 위원 과대추계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많이 잡혀 있다가……

○김상희 위원 과대추계됐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ICL 이용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높게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앞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김상희 위원 보완책 하나도 마련 안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자율도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고요……

○김상희 위원 그 이자율 갖고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더 낮추는 방안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생들은 이 문제 가지고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과부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고통 받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도 정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김상희 위원 최대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말씀드린……

○김상희 위원 약속한 것도 하나도 지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는……

○김상희 위원 그리고 올해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될 예산만 확보하느라고 거기에만 급급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실현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김상희 위원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교과부의 태도를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국민적 합의도 없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여러 번 설득을 했고요.

○김상희 위원 여러 가지 문제만 야기할 수 있는 방사광 가속기만 포항에다가 주는 그 예산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 확보하고 이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관련한 등록금 예산 하나도 관심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장학금 예산을 양보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김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차상위계층 장학금 추경에 편성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저희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기채방식을 국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김상희 위원 이자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자율은 당연히 낮춰야 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것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면 채권대납이자지원 더 추경에서 늘려 잡아야 되겠네요. 대폭 늘려 잡고 차상위계층 장학금 추경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추경은 올해 없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다양한 계층에 장학 지원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하시지요.

○김상희 위원 추상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 추경에서 이 관련 예산 다시 확보하시고 그리고 날치기된 예산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교과부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시지요.

○안민석 위원 장관은 지금 갈수록 영국 속담처럼 한 가지 거짓말 감추기 위해서 일곱 가지 거짓말, 계속 거짓말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장관이 직권상정을 언제 알았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처음에는 자신하고 무관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TV 보고 알았다고 했어요.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지요, TV 보고 알았다, 보고도 안 받고 TV 보고 알았다. 국회에서 저는 TV에도 나오기 전에 국회의원들하고 여기 행정실 직원들은 9시에 알고 있었어요, 9시. 딱 9시에 오니까 이미 직권상정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장관한테 일절 안 들어가고 텔레비전 나오기 전까지 장관은 몰랐다, 이것 누가 믿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오전이냐 오후냐 그러니까 그날 다른 일이 바빠 가지고 오전 오후가 기억이 안 난다고 김상희 위원 질문에 답변하셨어요. 할 일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분이 TV 볼 시간은 있었습니까? TV 볼 시간은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앞뒤 말이 맞아야지 말입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여당하고 사이에 우리가 10개 이야기하면 한두 개라도 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이 없으면 뭔가 솔직하기라도 해야 될 텐데 정치력도 없고 솔직하지도 못하고, 저는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도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당 위원들의 질문에 주무부처 장관이 직권상정을 TV 보고 알았다, 이 거짓 답변을 이걸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위원장께서 진솔된 장관의 답변을 위해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시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얼마큼 진실인지 아닌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상임위를 운영합니까?

○위원장 변재일 위원님들 다 질의하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지금 김상희 위원님의 대학등록금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제가 들어도,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느껴지는데 정부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지 않느냐, 교과부의 의지만 있었을 뿐이지 정부 내의 의지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실현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노력들이 정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娥 委員 송파갑 출신 박영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초·중등 교육의 업무를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하지 않았습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특히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불협화음이 많은데요. 제가 서울시의 제 지역의 학교를 다녀보면 지금 최근 들어서 최근 1년간 학교의 자율성이 후퇴되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1교시 시작 20분 전 30분 전에 오면 그것은 0교시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방과후학교 학생이 너무 많으면 이것도 학교에서 강요한 걸로 간주하고 그래서 이것을 교장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런 교육청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은 정부의 기본방침인 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방향이 다른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학교 자율화를 죽 진행하면서 교육청 차원으로 자율을 많이 내렸는데 그게 학교 단위까지 아직 안 내려가거나 혹은 중간에 더 규정이 강화되거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朴英娥 委員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방침과 각 시·도 교육감의 교육정책 방향이 다르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교육감과 장관의 업무 협조가 안 된다면 교육의 일관성 측면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다시 중앙행정기관인 교과부 중심 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내부형 교장 공모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과부장관이 임용제청을 거부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朴英娥 委員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교육자치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이렇게 교육감한테 임용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임용절차도 위임했는데 실제 지금 초·중등교사의 법적 지위가 지방공무원입니까, 국가공무원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국가공무원입니다.

○朴英娥 委員 국가공무원이라면 이러한 임용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교육감과 중앙 행정부가 이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된다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중앙 교육청에서 다시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지방교육자치라는 그 틀 안에서 작년도에도 교육감선거를 다 치렀지만 그러나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자면 지방교육자치의 개념하에서 국립대학을 다 없애고 다 도립대학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정부가 지방교육자치 부분이 어디까지가 교육의 지방자치 분권하고 맞는 것인지, 어떤 부분은 중앙 행정부서가 정책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 단위가 학교 자치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학교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일부 교육청에서 오히려 좀 역행하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교육청과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 자치를 위해서 교육청과 교과부가 같이 지원을 하고 같이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지방교육자치 형태로 간다면 초·중·고 교사는 지방공무원으로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 대학입시안을 보면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3696개 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대학 입시가 매년 바뀌고 이렇게 복잡한 것이 바로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일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朴英娥 委員 그리고 시행령에 의하면 입시안은 다음해 입학연도 입학 월, 3월이지요. 1년 3개월 전, 다시 말하면 전년도 11월 달에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교과부 측에서 작년 수능 이후에 각 대학의 논술 비중을 줄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간 이후에 대학이 입학전형을 확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朴英娥 委員 이것도 정부가 지나치게 교육정책에 간섭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대학에 자율을 주시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입학전형도 좀 간단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입학전형 숫자를 좀 간소화하는, 그것을 또 직접 지시하는 형식이 아니고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표로 넣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3월 내로 각 대학들이 대교협에 최종적인 입시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朴英娥 委員 마찬가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최대한 전형 숫자가 적어지도록 하는 것은 아마……

○朴英娥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이 그래 가지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朴英娥 委員 최근 수능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朴英娥 委員 만점을 1%로 한다는 그러한 장관님의 발언이 나가고 해서 또 물수능 불수능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인원을 제한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난이도 조정에 있어서조차도 되도록이면 정부의 간섭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육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교육을 줄이고 또 교육의 정상화를 향해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도 같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럼요. 그래서 1%라는 숫자도 사실은 난이도의 일관성을 위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정부가 간섭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정부

가 적어도 책임지는 수능의 경우에는 난이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朴英娥 委員 그리고 현안사항은 아니지만 작년에 의학전문대학원 문제는 각 대학과 의전원의 자율로 해 가지고 대부분의 대학이나 의전원들이 6년제 의과대학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 아시지요, 장관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런데 작년에 새로운 신입생을 받기로 되어 있는 약학전문대학이 2+4 체제로 감으로 인해서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1·2학년 학생들이 사실상 대학 공부에 전념하지 않고 약학전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기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계와 또는 약학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학전문대학을 이왕 6년제로 했다면 6년제 통 6년으로 해서 1학년부터 약학전문대학교 학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의견의 일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학년과 3학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시에 뽑는 것이 무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년, 정 안 된다면 2013년부터라도 통 6년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朴英娥 委員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한 해 한 해 우리가 시스템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좀 더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朴英娥 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30초만 쓰겠습니다.

오산대학교 사분위 관계를 보면 과거의 임시이사 체제가 교과부가 3, 안민석 위원 추천 1, 오산시장 추천 1, 그다음에 당시 설립자 집안인 신씨 집안 추천 2, 학내 구성원 2로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에 확정된, 지금의 사분위가 확정한 임시이사 선정 방법에 의하면 해당 관할청이 5 그리고 설립자 측이 2, 학내 구성원 2 해서 5 대 2 대 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朴英娥 委員 그런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 교과부가 3명밖에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과거의 경우는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고요.

지금 현재에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朴英娥 委員 현재라는 게 앞으로 새로운 임시이사 체제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 아니면 5 대 2 대 2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담당자한테 답변을 좀……

○朴英娥 委員 예.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대학지원실장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 이해관계인 추천으로 된 경우에 선임된 임시이사들께서 추천 주체들의 의견을 많이 대변하신 바가 있어서 정상화되는 데 성과가 조금 미흡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시이사들을 재선임하는 데 있어서 오산대학의 임시이사 정상화에 많은 도움과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관할청만이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러니까 다섯 사람을 관할청이 추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해 주시지요.

○朴英娥 委員 예.

그리고 사실 임시이사 체제라는 것은……

○위원장 변재일 30초가 한참 지났는데……

○朴英娥 委員 죄송합니다.

그게 임시이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산대학이나 여타 어느 대학이라도 임시이사 체제 전환을 종료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조속히 정이사 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오산대학을 포함해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데는 되도록 빨리 전환을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저도 납득이 좀 안 되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

다.

12월 8일 날 그날 소위 날치기 할 때 그러면 교과부장관으로서 한나라당 측에 '이것을 좀 빨리 처리해 달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 달라.' 이런 직권상정이라든가 관련 비슷한 취지의 요청을 안 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한나라당뿐만이 아니고 자유선진당이라든가 계속……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만 묻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법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것 말고 '직권상정 좀 빨리 해서라도 빨리 처리해 달라' 이런 취지는 없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직권상정에 관한 부분은 국회의 임무로……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답만 좀, 시간이……

단답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없었단 말씀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교과부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한나라당이 처리한 것이네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교과부는 무관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과부는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민 위원 전혀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됐고.

그러면 그 경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TV를 통해서 본 것 외에는 추후 사정에…… 미리 인지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단 말씀 아니에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과학벨트인데요, 지금 질의하시면서 장관께서 답변을 분명히 안 하니까, 단답형으로만 빨리빨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대통령께서 6월까지 입지 등을 모두 다 확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장관도 같은 뜻인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민 위원 6월까지 확정짓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상반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상민 위원 전반기가 6월 달까지……

대통령도 6월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장 변재일 전반기가 6월이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상반기가 6월 말까지니까요.

○이상민 위원 기본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하실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이제……

○이상민 위원 장관이 법에 따라서 말씀하시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4월 5일 날 법이 발효가 되면 바로 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그런 일정들이……

○이상민 위원 그런데 자꾸 그 말씀을…… 저하고 자꾸 엇갈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별로 의견이 대립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은, 4월 5일 발효 이후에 구성은 정식 출범하는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기본계획은 장관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위원회에서 다 심의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것을 제가 미리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이지요,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위원회를 미루어, 빗대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의견을 달리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그 법에 따르면, 법 8조에 따르면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 의결도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는 장관입니다. 그 권한과 책임은 장관한테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 입지 선정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만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은 상반기 내로 하는 것이고요. 또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에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입지 선정과 별도로, 기본계획과 입지 선정은 별도의 방식으로 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입지 선정이 먼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상민 위원 법에는 거점지역·기능지역 위치와 면적 등을 포함한 내용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러니까 입지를 먼저 선정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얘기……

○이상민 위원 아, 그러면 그런 뜻이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입지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올 상반기 내에 확정을 짓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그 이외의 내용까지 포함한 기본계획은 입지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추후에 발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지난번부터 계속 서로 엇갈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월 12일 날 교과부가 보도자료, 이 질의를 하다가 정회되고 막 그랬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29일 국과위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이 확정한 안은 유효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계획안이니까요, 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에서 계획안을 많이 참조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뒤엎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지금 없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뒤엎는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수정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 취지는 존중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 취지는 존중하고요.

그러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수정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이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럼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상민 위원 왜요? 아니, 이 국과위에서 대통령 주재로 내린 종합계획안이 변경되려면 대통령 주재든 하여튼 국과위에서 또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요, 예.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장관이 이것을 바꿀 정도의, 대통령 주재로 확정한 이 계획을 바꿀 정도의 구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이것은 일단 유효한 것 아니에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일단 기본계획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만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입지 결정이 이루어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완전히 수정 없이 간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는……

○이상민 위원 그러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그 기본계획 입지를 포함한 기본계획에 담느냐 안 담느냐도 여전히 미지수네요? 존중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이 뜻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일단 법적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민 위원 절차보다도 장관의 구상 뜻이 어떠냐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되는 구조

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심의위원회의 당연직이 각 부처의 차관들이 포함되고 거기에 외부 위원 위촉은 장관께서 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장관의 뜻이 안 담기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최대한 중립적으로, 어제도 많은 제안은 있었습니다마는 과학자분들 또 지역 안배해서 그렇게 과학벨트를 정말……

○이상민 위원 그 위원 구성을 위한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할 텐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이상민 위원 다른 기준이나 따로 정하는 무슨 프로세스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별도의 프로세스를,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하여튼 과학벨트가 우리 과학 발전에 정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것은, 우리가 과학 발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것은 다 아는 것이고 과학 발전을 해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또 확인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의 핵심인데 이것을 같이 같은 지역에 놓느냐, 다른 지역에 놓느냐도 확정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할 때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다른 위원이 할 때는 '분산 배치는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 다른 게 아니라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그 2개만 말하는 겁니다, 연구 설비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대형시설 그러니까 중이온가속기 포함해서 그것은 반드시 거점지구에 두기로 되어 있는 것이 법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형 연구 설비인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거점지역인 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법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대형……

○이상민 위원 법은 저도 알아요. 그것만 분명하게……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기초과학연구원은 그러나 반드시 거점지구에 둘 필요는 없는 것이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장관, 지금 뜻을 묻는데, 법률가적인 법 해석을 묻자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왜냐하면 제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제 임의의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각각 다른 지역에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법체계로는……

○이상민 위원 법체계를 묻는 게 아니라 장관의 뜻을 묻는데요?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하시지요.

○이상민 위원 마무리가 아니라 장관이 답변을 저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마무리를……

○위원장 변재일 글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상민 위원 장관 보고 마무리를 하라고 하셔야지 자꾸……

○위원장 변재일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민 위원도 시간은 지키면서 하시고 보충질의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이상민 위원 장관 마무리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다시 말씀드리면 거점지구에 반드시 대형시설은 두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초과학연구원은 반드시 거점지구에 있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법에. 그래서 그런 법적 체계를 보면……

○이상민 위원 과학기술계에서 가속기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을 따로 두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솔로몬 재판처럼……

○위원장 변재일 자, 제가……

○이상민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제가 다시……

○이상민 위원 재판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것에 동의합니까, 안 동의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것은 제가 지금 동의하냐 안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기가, 이제 과

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설립도 되지 않았고 법적인 발효도 안 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현재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가속기는, 거대과학시설은 중이온가속기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중이온가속기와 연구원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법에서 거점지구에는 거대과학시설은 가게 되어 있지만 기초과학연구원까지 거점지구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셔 가지고 '기초과학연구원이 거점지구 이외에 갈 수도 있고 중이온가속기가 건설되는 지역은 거점지구지만 기초과학연구원은 거점지구 이외에 분리해서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게끔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다.

어제 답변 나온 것하고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여태껏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거대과학시설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중이온가속기는 분명히 간다. 중이온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원과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가 지난주까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은 아니라잖아요.

○위원장 변재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발족을 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가 독립된 사무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위원장 변재일 독립된 사무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무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만들어 놓은 자료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이 발효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입지선정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뭘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또 입지 선정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금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기본계획은 입지가 선정된 후에 그 입지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계획은 만들어지고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입지가 선정되며 그 입지 위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 갈 것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 관리상,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비논리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정리하셔 가지고, 지금 또 혼란스러우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따가 답변시간 별도로 드릴 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이어서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서울 도봉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중요한 문제 같아서 지금 한번 꼭 좀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교육과정 개정·개편하게 되어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선동 위원 지금 보니까 2011년도부터는 운영체제 개편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과서는 2014년부터 채택해서 현재 수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체제와 교과서의 공급 시기가 벌어져 있어서 교육 현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따르고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총론하고 각론 이런 것들의 발표를 통상적으로 같이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2009년도 12월 말하고 2011년도에 따로 따로 총론과 각론이 발표돼서 이런 갭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총론이 먼저 발표되고, 총론에 따라서 지금 각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래서 수업 방법하고 수업 내용의 불일치 기간이 3년여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불일치가 계속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또 그것을 바라보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수업 내용을 따라가고 이수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따

르고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과과정 개편해서 새로 도입하는 개념에는 교과군이라는 것도 있고 학년군 개념, 집중이수제, 이런 개념들이 같이 녹아져 있어서 이런 개념들을 교과서가 채택될 2014년까지 그대로 기다리려고 그러면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장관님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교과서를 채택하는 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초등학교·중학교의 교과서 개발하는 것은 1년 정도 당겨서 교육 현장의 그런 부담, 혼선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과서 개발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현장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11년 8월 말까지 교과별 교육과정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말씀 주신 대로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개발 속도를 좀 빨리 해서 가능하면 1년 정도 앞당기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중학교에 관련한 부분은 1년 정도 교과서 개발을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으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기가 되고 또 입학철이 되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대학 등록금, 국공립·사립대학 다 포함됩니다만 대학 등록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89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고, 26개 대학이 인상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략 이 추세 맞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70개, 그러니까 전문대학 포함해서 그렇게 동결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2%, 3%대에서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는 등록금 반값 공약이다, 또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줄이기 공약이었다, 이런이런 정치적 실랑이도 사실 있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그리고 또 그렇게 가기 위한 정책적인 의지, 이런 것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간 내에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가시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타당에서 등록금 부담 절반 줄이겠다, 등록금 반값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어려운 정책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오늘 교과부 현안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오기 전이지요, 2004~2008년 당시에 평균 등록금 인상률, 특히 국공립대가 9.1%였습니다. 그리고 사립대는 6.2%였어요. 그리고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2009~2010년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과거 정권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국공립대가 1.5%, 그리고 사립대는 1.1%에 해당되는 등록금 인상률의 결과를 노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 사실은 등록금 인상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지요. 특히 국공립대학교는 9.1%나 됐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교과부에서 등록금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같으면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이 저렴한 등록금을 메리트로 하는 지방 국공립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ICL과 관련해서도 제가 달리 드릴 말씀 따로 있습니다만, 우선 2012년도 내년에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을 만약에 1% 인하하는 방법론을 우리 교과부에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투여해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

여…… 1%를 하는 데 국공립대학교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하면 가능할 건가 한번 설계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만일 지방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국공립대학교, 그리고 그렇게 가서 또 국공립대학교가 좋아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관리 10개년 계획' 이런 것도 저는 교과부에서 의지를 갖고 한번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인하를 단 1%라도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하시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발표된다 그러면 이게 아마 사립대학교에도 굉장한 시사점이 될 거고, 정부가 등록금을 어떻게 다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좋은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한번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요,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1%를 인하하려고 할 때 정부 재정은 어떻게 들어가며, 그것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전남·북, 광주 교육감을 언론에서는 '진보 교육감'이라고 부르고 있고 세간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장관께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별도로 그렇게……

○권영길 위원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교육청의 정책들, 그다음에 전교조가 추진하고 있는 것, 장관께서는 전부 반대합니까? 거부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무조건 반대다 그런 건 아닙니다.

○권영길 위원 무조건 반대는 아니지만 반대하는 건 맞네요, 그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니,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소통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혼란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하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육정책은 현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혼란을 주는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권영길 위원 전교조하고 단체교섭 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권영길 위원 단체교섭 거부할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3월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경기·강원 6개 도시 고교평준화 반대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평준화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평준화 지정을 요청해 왔는데 그게 준비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

○권영길 위원 교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하고 경기·강원 교육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 다릅니다. 제가 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표를 들어 보이며)

지난번 교과부에서 장관께서도 저희 야당 위원 만났을 때 '미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1차관께서도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저한테 보낸 이 자료, 표에 의하면 교과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제가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마는, 경기교육감, 강원교육감, 교과부장관, 이 3자가 같은 자리에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거든요. 교과부가 경기·강원의 고교평준화 6개 도시 못 한다고 내건 이유를 양 교육청에서는 인정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거고, 누군가가 사실과 다르게 확대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림중학교, 호반초등학교 내부형 공모 교장 건, 이것도 거부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임용 제청 거부했습니다.

○권영길 위원 이것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는 언급 않겠습니다마는, 장관께서 17대 국회의원 시절에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법안 발의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교장공모제법안 제가 발의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런데 국회의원일 때는 발의하

고 장관이 되어서는 싹 뒤집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장관이 돼서……

○권영길 위원 전교조 출신 교사기 때문에 거부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길 위원 무엇 때문에 거부한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장공모제는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공모제 중에 이제 초빙형, 내부형……

○권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두 학교를 구체적으로 전교조 출신이기 때문에 거부한 겁니까, 아니면 거부해야 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전교조 출신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고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권영길 위원 그 부분에도 절차상에…… 양측의 주장이 또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객관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난 다음에 위원장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 힘을 발휘해야 될 곳에는 안 하고 지금 다른 곳에 장관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전교조라고 그래서 그렇게 거부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떤 데 힘을 써야 되느냐? 사분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데, 그럴 때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사분위가 이렇게 결정하고 난 사립대학들 전부 분쟁이 더 커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세종대, 조선대, 상지대, 강원대, 수습할 수 없는 분쟁 상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들으셨지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5개 학교,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대구외대, 대한신학대학원대, 여기서 사분위가 심의하겠다고 그러는데 제 요청은, 지금 이우근 위원장과 또 한 이사 임기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권영길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내 임기 중에 이것 하겠다', 그리고 막말 비슷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정부가 개입하고 안 하고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장관이 사분위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안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장관이 사분위 결정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권영길 위원 사분위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이거 빨리 해치우고 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립대학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서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사학분쟁위원 중의 한 사람은 민주당 몫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추천되고 나서 업무가 개시될 때 하라, 이거 합리적 요청이잖아요.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학등록금 문제에 관해서, 오늘 어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어느 사립대학입니다. 499만 9900원, 500만 원에 100원 부족한 거예요. 대학에서 이런 장난 쳐서야 되겠습니까? 499만 9900원, 100원 있으면 500만 원이에요. 교과부가 이런 대학등록금……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장관께서 총장들 불러 놓고 등록금 동결하라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다른 대학들이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악은 하셨나요? 신입생하고 대학원생들을 대폭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은, 지금 동국대학 같은 데는 지난번에 삼보일배 하고 그랬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신입생만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표를 만들 때 재학생의 등록금까지 다 지표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권영길 위원 이런 홈쇼핑 같은 데서 하는 짓거리 대학에서 안 하도록, 이런 데 정부가 개입해서 등록금 바로잡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님께서 경기와 강원의 평준화 신청에 대해서 반려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고교평준화 정책에 관한 교과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겁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과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다양화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평준화를 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특히 기피학교 같은 부분들은 다양한 욕구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주광덕 위원 평준화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신청을 한다면 교과부는 언제라도 평준화 정책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감과 또 시도에 이양하여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오히려 그런 점까지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주광덕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장관께서는 평준화 문제에 관해서는 시·도 교육감한테 그 업무 자체를 위임할 그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시도 조례로 결정하도록 저희가……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시도에서 조례로 결정해서 시·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게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주광덕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교롭게도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신청한 6개 지역이 또 지난번 선거에서 흔히 말하는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이고 해서 신청 지역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또 그리고 교과부가 추진하는 이런 다양화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는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틀은, 특히 평준화에 관련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그동안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차원에서 기존에 해 왔던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광덕 위원 좌우지간 실질적으로 시도로 권한을 이양을 해서 교육자치를 앞으로 실현하겠다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주광덕 위원 전에 평준화된 지역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포항이나 목포, 여수, 순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사전에 지역별 학군 설정안이라든가 전형방법이나 학생배정안에 대해서 안을 만든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3분의 2 찬성인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교과부에 신청을 했고 따라서 교과부에서는 절차상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다 이것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허용했습니다.

○주광덕 위원 허용해 줬다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주광덕 위원 그러면 기존에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된 그런 지역에 비해서 이번 경기도의 세 곳, 강원도의 세 곳은 그러한 어떤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말씀하신 학군 설정이나 학생 배정방법이나 또 기피학교 지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론수렴이 되지 않은 채 지원이 됐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일부 경기도나 강원도 교육감은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다른 취지의 그런 말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다음은 등록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값등록금 문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새로운 복지논쟁 내지 나아가 선거에 임박하면 아마 복지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것 같은데, 반값등록금에 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게 하는 차원이지요. 그래서 일명 '반값등록금'입니다만 크게 보면 국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등록금 부담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정책이 한나라당

에서 17대 때 입안이 됐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입안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처에 와서도 그런 취지에 따라서 지금이 정부에서 국가장학제도가 도입이 됐고 또 ICL도 도입이 됐고 또 지금 장학금도 한 5배 정도 국가장학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부담을 반으로 줄이지는 못했지만 계속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일부 대학교에 새로 들어가는 대학생들이나 또 국민들께서도 반값등록금 하면 마치 등록금이 이전에 500만 원이었으면 이게 250만 원으로 등록금 자체의 절대액수가 줄어드는 걸로 생각하고 또 그러한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그런 공세도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담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일단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내놓은 반값등록금도 같은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반값등록금의 효과를 가장 많이 냈던 게, 국가장학제도를 구축해서 그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늘린 것은 2007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 비해서 어느 장학금을 늘렸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한 1000억 규모였었는데요, 지금 한 5000억 규모니까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국가장학제도는 한 5배 정도로 확대되고 늘어났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주광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의 내용은 든든학자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든든학자금도 있고요.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순위를 한다 그러면 반값등록금을 느끼기 위해서, 국가장학제도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국가장학제도를 통해서 장학금을 늘려 왔고……

○주광덕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관이 생각하시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리고 든든학자금이 있고, 세 번째는 대학 재원을 다변화해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재원을 다변화함으로써 등록금 자체를, 등록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런 노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억제한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주광덕 위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시다시피 계속 동결하는 대학들이 많았으니까요.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등록금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게, 그렇지만 장관 생각에도 지금 현재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계속 진행형이고요.

○주광덕 위원 목표가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줄였다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직까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맞춤형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주광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목표는 그 부담이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현재 와 있는 우리의 상황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과가 있다라고 평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ICL 부분이 사실 정부가 이자 부담을 하지만 결국 학생들이 되갚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정책에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하는 그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을 많이 줄인 게 되지만 사실 ICL, 든든학자금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정부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추진 중인 사안은 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액공제가 되면 또 그것을 대학의 자체 장학금 제도로 그렇게 하도록 해서 대학이 자체적인 장학제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 구축이 워낙 처음 원안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그게 아

직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유정 위원 김유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다 얘기 못한 서울대 법인화법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표현하기 쉽게 '서울대 법인화법'인데 이 법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알고 계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정 위원 이렇게 중요하고 논란이 되는 법의 전체 명칭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죄송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

○김유정 위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김유정 위원 이게 1조에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이 뭔지 장관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죄송합니다.

○김유정 위원 이게 뭐 하자는 법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목적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시킨다' 이게 이 법의 목적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게 실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정 위원 다른 건 다 제쳐두고요. 이게 지금 일본 국립대의 법인화를 사실은 벤치마킹한 건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 대학하고는 저희들은 다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위원 실제로 그렇지만 일본의 예를 많이 반영한 거 아닙니까?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상황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도 일본을 많이 검토하고……

○김유정 위원 이게 철저하게 실패한 건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는 한국형 모델로 가야 되겠다 해서……

○김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본의 전철을 고스란히 답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타임지하고 상해교통대학에서 2004년하고 2010년에 세계대학 랭킹 평가한 내용 혹시 보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유정 위원 그때 일본에서 동경대하고 교토대 두 군데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반면에 싱가포르나 홍콩대같이 법인화해서 랭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대학들도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동경대나 교토대학보다 훨씬 랭킹이 뒤처지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뾰족한 묘수가 있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일본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지원을 줄였고요. 또 둘째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 놓고는 오히려 문부성의 규제가 상당히 지나치게 또 계속 유지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서울대 법인화의 경우에는 재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규제완화 부분도 저희들이 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김유정 위원 그러니까 자율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정 위원 지금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교과부·기재부 차관 다 당연직이사로 참여하고 감사 중의 한 사람은 교과부 추천받게 되어 있고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자율권이 보장이 될 수 있지요? 이거는 그냥 자율화를 표방한 관치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회의 전체 구성에서 한 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도 사실은 법제화 논의과정에서 오히려 예산이나 이런 절차상에 정부의 차관이 들어

오는 것이 좋다고 해서 오히려 구성원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위원 좋다라는 구성원들이, 어느 누가 정부의 차관이 들어와서 좋다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오히려 구성원들이 그런 입장들이 많았습니다.

○김유정 위원 서울대 법인화법 자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이사회 구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서울대 반발이 심한……

글쎄요, 서울대 법인화 죽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 처음에 반대하던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고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김유정 위원 그 근거가 뭡니까, 지금 찬성하는 분위기로 돌아간다는 근거가? 아까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말씀하셨던 대로 과학벨트처럼 이미 법안이 통과됐으니 도리 없다 이런 취지에서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수평의회에서 과반을 훨씬 넘는 비율로 법인화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게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그 근거를 좀 내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 근거를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위원 찬성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다는 근거를 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교수나 교직원들이 판단하기에 또 학생들이 듣기에 장관님의 답변은 굉장한 분노를 살 수 있는 근거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서울대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이런 문제점, 제가 언론보도한 것도 보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유정 위원 이게 지금 서울대 법인화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다음에 절차적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서울대가 얼마나 많은 특혜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팩트는 실제로 많이 발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계시지요? 서울대 국유재산평가가 작년 말 현재 3조 2000억 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일개 법인에다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가재정 지원은 여전히 주고 지속하겠다고 하고, 자율성은 그다지 늘어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는 양손에 떡 들고 있는 거지요. 다른 대학도 국립대 전환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 주실 자신 있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타 국립대학들도 법인화할 경우에는 예산을 계속 지속 지원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반대가 없고요.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국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원칙을……

○김유정 위원 그러니까 3조 2000억이 넘는 이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0위권 정도 랭킹에 해당되는 이 정도의 자산을 공짜로 그냥 무상양도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고 국민적 분위기 속에서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국제경쟁력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미국의 유명 주립대학이나 그런 경우에도 재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김유정 위원 그러면 기재부는 왜 반대했을까요? 기재부하고 지금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랑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언제쯤 기재부하고,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일사천리로 갈 수 있을까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어느 분이 협의하고 계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담당국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김유정 위원 기재부는 법이 어쨌거나, 법이 날치기로 됐건 어찌됐건 통과됐으니 이제는 도리 없으니까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국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기재부랑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협의 진행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5월 이후에나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누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장관님, 계속해서 거짓답변 하시면 곤란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기본적으로 자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랑 협의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유정 위원 지금 협의 안 하고 계시는 건데 왜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협의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그건 장관님 생각이시지요. 실제로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유정 위원 어디까지 진행하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대학지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통과된 안은, 법률안은 정부 협의를 거쳐서 온 안이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미세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자산 관계입니다. 어차피 말씀하신 게 지금 자산들이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자산들입니다.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연습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재산의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 특히 교육용 관계 재산은 상당히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걸 처분할 수 있게 되거나 담보제공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 함부로 그런 재산이 매도되거나 양도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교육연구에 필요한 자산의 범위를 협의하는 데 있어서 기재부와 약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만간 그것이 타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열심히 협의 중입니다.

○김유정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예.

○김유정 위원 당초에 장관님이 낭독하셨던 1조의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현실적 조건들이 매우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대학 경쟁력 강화 측면이나 또는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드리고요. 또 통과되기까지의 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한 점도 물론 매우 클 뿐더러 서울대의 자산 규모나 또 서울대만이 갖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특혜, 문제점 때문에 아마 더 큰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조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전혁 위원 인천 남동을 출신 조전혁입니다.

이어서 서울대 국립대 법인화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립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르면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목적대로 되어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되어 있는데 KAIST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법인화대학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KAIST가 충분히 자율권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국립대학에 비해 가지고 사실은 자율권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IST 운영의 예를 보면 교수 TO를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전부 역시 기재부나 아니면 행안부의 승인은 다 받아야 되고 그래 가지고 KAIST 운영도 실제로 KAIST에 물어보면 자율적으로 잘 못한다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저희가 KAIST뿐만 아니고 울산과기대나 이렇게 기왕에 법인화가 된 국립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이번 기회에 서울대 법인화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법인화된 대학들의 경우에 더 자율화할 것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하고요 그 경험을 서울대 법인화 추진 과정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조전혁 위원 그러니까 정말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인원의 부분, 예산의 부분 그리고 대학 내부의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대학이 그때그때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즉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축성을 발휘하게 해 주는 게 자율화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존경하

는 김유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김유정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일본이 국립대학 법인화가 되면서 실패한 부분 그것을 따를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장관님께서 기대 섞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 싱가포르나 아니면 홍콩 쪽 모델로도 저는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 유형의 국립대 법인화에서 서울대 법인화 모형이 중간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정부에서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싱가포르나 홍콩 모델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더 보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학교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개혁을 대학사회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확실히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립 서울대 법인화 법안에 따르면 내부 이사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첫째, 총장 부총장 교수평의회 회장 그리고 또 발전처장 무슨 처장 해 가지고 5명인가 6명인가 대학 내부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지적하신 것은 내부 인사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조전혁 위원 예, 저는 그것도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사회를 진행할 때 보면 내부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이사회를 주도해 가고 이사회의 결정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유하고 경영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되거든요. 국립 서울대법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거버넌스를 갖고 있습니까? 국민이 갖고 있어야 되지요. 국민의 대학이 되어야 되는데 이사회 구성을 보면 이게 자칫 교수들의 대학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그렇게 따라가서 될 경우에는 서울대 앞날이 굉장히 암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법상으로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내부인사가 좀 많다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요. 여전히 과반수가, 2분의 1 이상이 외부인사로 되어 있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론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전혁 위원 아니, 그런데 장관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지금 교과부 차관도 이사인가요? 기획재정부 차관도 이사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그리고 지식경제부 차관도 거기 아마 이사로 되어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전혁 위원 아닌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교과부 차관, 기재부 차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 안에서는 두 분인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 한 분 분명히 서울대 출신이실 거고요. 동창회장이나 이런 외부인사 들어가면 또 서울대 출신일 거고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사회 구성을 굉장히 다양화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내부 교수 출신으로서 이사회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은 총장 한 분으로 저는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다시 논의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말씀주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무리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예.

○조전혁 위원 지금 교장공모제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의 우려 섞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이 구조가 얼마나 좀, 소위 전교조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좌파세력도 그렇고 제가 봐도 사실 우리나라 족벌사학들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부터 해 가지고 그 가족이 하고 또 그 아들이나 누가 또 교장부터 해 가지고 다 하고 그런데 이걸 얼마나 그분들이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전교조 서포트를 받은 교육감이 오니까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율학교에서 전교조 교장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족벌사학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사벌, 전교조 사벌공학을 지금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상원초등학교나 영림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 많은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명백히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하신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문제가 됐던 네 학교를 철저히 감사해서 그중에 두 학교만 저희가 임용제청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임용제청 거부를 떠나 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과정에 참여를 했던 관련 공무원들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 처분도 확실히 검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 관련해서 현안이 많습니다마는 워낙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과학벨트라고 하는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장관님께 좀 몇 가지 묻고 확인하겠습니다.

과학벨트사업은 민족의 미래산업이고 또 먹거리산업으로서 3조 7000억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연구기관 발표에 의하면 경제유발효과가 230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과학벨트사업을 정치 상품화하는 것, 이것 옳지 않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과학벨트와 관련해서 정치 상품화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입지 선정의 5대 요건이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이미 변칙 통과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관계법 조문에 보면 5대 요건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입지 선정의 요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한국에 과학기술의 인프라가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집중화되어 있는 것 맞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75%가 집중화되어 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현재 구축된 과학기술의 인프라 이것이 무시돼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이번에 과학벨트 입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진단되고 또 파악된 결과에 의해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주호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에 위원회가 되면 그때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느 특정한 지역의 입지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러한 요건들이 적어도 검토되어야 한다, 고려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이미 과기원대학을 육성하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대전의 KAIST 그리고 광주의 GIST 그리고 대구 쪽에 DGIST, 정부가 지금 육성하고 지원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께서도 이미 확인하셨습니다마는 2009년에 광주 과기원대학이 QS의 평가 결과 아시아에서 1위를 하고 100대 대학에서 13위를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1

년 동안 열심히 해 가지고 2010년에는 100대 대학 중에서 서울대나 KAIST가 포함되지 않은 100위권 밖에 있는데 바로 이 광주 과기원대학이 10위권에 랭크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인프라나 훌륭한 자원과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에 대해서도 이것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주장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현실적 상황을 진단해서 올바른 처방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 의해서 본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점지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본원인 거점지구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는 것은 틀림없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김영진 위원 또 달라졌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중이온가속기는 거점지구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이온가속기는 고도의 정밀성과 지반이 안정해야 된다, 5대 요건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지구촌에서 가장 노벨물리학상과 과학자를 많이 배출한, 19명이나 배출한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봤습니다. 거기도 다른 가속기하고는 달리 중이온가속기에 대해서는 지반의 안정성 이것이 100% 제1의 항목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정주 여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정주 여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정주 여건은 그냥 출퇴근하기 쉽고 가깝고 또 환경이 좋고 숲이 우거지고 잔디가 잘 갖추어져 있고 이런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노벨물리학자와 과학자들이 현지에 와 가지고 중이온가속기가 있는 데에 와서 실험하고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정주 여건을 말하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정주 여건을……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연구하는 데 올인하는 여건, 바로 이것을 정주 여건으로 말합니다. 1시간 거리 이렇게 돼 가지고 그냥 와서,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이래 가지고는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근거를 제가 하나 제시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연구소가 80개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본원이 뮌헨에 있습니다. 본부가 있어요. 그리고 베를린……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베를린, 본 그리고 함부르크. 우리로 말하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이런 데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요. 80개 연구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것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갈기갈기 찢자고 하는 것이다' 과학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국제적인 추세와 현상적인 상황을 어떻게 과학자가 뻔히 이 지구촌에서의 이런 일들, 바로 이웃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또 한 분의 정치 지도자께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나누느니 차라리 그만둬 버리자. 하지 말아 버리자' 그만둬 버리자는 얘기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죽이자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정치 상품화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 가지 유감스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너무 이것을 길게 이렇게 함으로써 국토가 사분오열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에서 지금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지요? 여당은 여당대로 갈라지고 야당은 야당대로 갈리고 청와대 그리고 당·정·청이 의견을 달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소모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저는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께서는 이 막중한 민족의 대역사, 과학벨트 입지를 선정하는 데 심사위원장이 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각계의 과학기술 전문가들 이십여 분을 심사위원으로 두고 계신단 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행여라도 데스크 논리로 탁상에서 그냥 자료로만 혹은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 가지고 결정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께서 혹시 이 막스플랑크 연구소나 일본의 이화학연구소를 한번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CERN이나 이런 연구소들은 가 봤습니다만 일본의 이화학연구소는 못 가봤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말씀만 듣고 현장은,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안 가 보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저는 이 국회가 끝나면 현장을 가 볼 생각인데요.

이주호 장관께서도 이 막중한 문제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자신이 현장을 방문하고 "와 봐라!" 요즘 이 장관께서 교육 현장을 많이 다니신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영진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려서 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승자 독식의 원칙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들이 유치 경쟁에 올인하고 있는데 삼각벨트화, 서·남해안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는 삼각벨트 이른바 대전 대구 광주 이 삼각벨트로 결정하는 것이 화합과 상생의, 치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다고 그래서 나눠 먹기 식으로 무조건 그냥 다 이 지역으로 나누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R&D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광주 대전 대구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기원대학이 세 군데에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R&D 특구를 결정할 때도 정부의 과학기술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아주 정밀한 현장 실사를 하고 해서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반드시 참고하시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준비하기 직전에 도착한 모 일간지를 제방에서 보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다른 지역의 의원들께서…… 저를 출당 징계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삼각벨트화를 주장하는 법안을 냈다. 그것을 상정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법안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다가 제출했는데 그것이 제출되어서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문제가 저에 대해서 징계와 출당을 해야 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변재일 그것은 민주당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위원장이 아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갈릴레이의 고백, 현재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이 문제 해결은 당리당략으로, 정치 상품화로 특정한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서 지진 다발 지역인 포항에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된다든가 본원이 설치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 정읍 출신 유성엽 위원입니다.

저도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먼저 물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영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이온가속기는 거점지구에 둔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것은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성엽 위원 그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성엽 위원 그것도 법률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법률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지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법안……

○유성엽 위원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이따가 답변 중이라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께서도 어떻게 답변했냐면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법 절차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원점에서 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또 그에 앞서서 본회의장에서 김황식 총리께서도 거의 똑같이 워딩이 거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그러면 총리 답변 그것은 교과부에서 써서 총리실에 제출해 주고 총리가 그것에 따라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경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보통 총리 답변의 경우에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러니까요. 제 경험으로도 틀림없이 소관 부처에서 답변서를 써서 제출해 주면 약간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시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교과부에서 총리실에 내줄 때도 그런 기조 속에서 답변서를 내준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정확하게 어떤 답변서를 내줬는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유성엽 위원 혹시 총리 답변 관련해서 답변서 내준 부서의 실장님이나 누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렇게 내주셨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답변이나 총리 답변이나 상당히 일치를 한단 말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거듭 오늘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난 연말 날치기 법률안에 대해서는 장관님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사전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그 말 사실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저는 믿기지는 않지만 그러면 장관님 답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때 네 가지 법률 중에서 한국장학재단법 빼 놓고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요? 한국장학재단법은 아마 기금이 폐지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아마 예산과 함께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예산부수법안이었지요.

그런데 나머지 3개 법안을 도대체 장관님께서도 전혀 관여가 안 된 상황이고 전혀 모르는데 왜 이게 처리됐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서울대 법인화법은 이래요.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소위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효율화 원칙과 맞아떨어지는 법이예요, 이 법인화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정리가 그렇게 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 수정이 무산되니까 뭔가 화도 나고 분풀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을 처리를 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원점 재검토로 들어가야겠다, 아마 상당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법이 선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과학기술기본법도 과학기술부 폐지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나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통치권자로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것을 날치기로 통과시켜서라도 국과위를 출범시켜야겠다 아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3건의 법률이 선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다면 장관님은 관여를 안 하셨지만 적어도 청와대가 여기에 관여는 되어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성엽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은 안 하셨다는 것은 본인 이야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장관님이 관여를 안 했으면 청와대라도 관여했다라는 심증이 강하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왜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장관님 소관으로 중요한 법률들이고 또 앞으로 우리 상임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과부를 끌어가는 과정에서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어야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삼권분립 원칙 이런 것들……

○유성엽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해답을 저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은 지난번에 제가 지적 말씀 드린 대로 법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그 법 절차에 의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형식 논리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정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순을 고민해 주셔야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강원도·경기도에 있는 입시제도 변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주광덕 위원님께서 옆에서 질의를 했고 또 장관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 의지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다양화가 큰……

○유성엽 위원 그러니까 다양화 방침으로 가는 것이지, 다만 이것이 오래 흘러 왔고 또 혼란을 우려하기 때문에 평준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준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뜻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떻든 저는 정부라는 것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과 지향을 갖는 것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권리가 있다, 그것은 뭐 좋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탓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어떻든 경기도와 강원도가 무산된 것 보면 꼭 교장공모제에서 교과부에서 불승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진보 교육감, 진보 후보 여기에 대해서 교과부가 아주 티를 내면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아쉽지만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그것도 국민이 선택해 준 정부의 하나의 의지고 선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보고서에서도 보면 평준화 지역 지정을 이제 교육감이 실시하는 지역으로 해서 교과부령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고 시도조례로 해서 정하도록 해서 이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양해 주는 것까지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방 이양은 저도 권장하는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로 되어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유성엽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련 법률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의결정족수 말고 특별의결정족수를 요하는 경우들이 무엇무엇이 있고 구체적으로 의결정족수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에 앞서서 3분의 2 조항은 과거부터 3분의 2 정도 수준에서 그것을 넘어설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또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용을 안 하고 지난 정부부터 그렇게 죽 해 온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때문에 그냥 그대로 3분의 2라는 조항이 지금……

○유성엽 위원 그것은 시도의회의 의결정족수가 아니고 아마 의견 수렴을 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의견 수렴 맞습니다.

○유성엽 위원 70%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러나 이것은 의결정족수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시도의회나 과거 교육위원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 이상의 특별 의결정족수를 요하는 경우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우리가 제출한 법에도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지 시도의회에서 3분의 2의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3분의 2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항상 조례를 할 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거든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때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유성엽 위원 조례를 3분의 2로 의결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좋습니다. 그것은 다행스럽고요.

또 하나 밑에 향후 교육에 보면 앞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절차와 기준을 세부적이고 촘촘하게 넣어 버리면 시도 조례로 이양한 취지를 오히려 무색케 하는, 훼손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할 것이고요. 또 개정할 때 위원님께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래서 시도 조례로 이양하는 문제라든지 또 시행령에다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정하실 때에 기왕에 이양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시도의 자율권이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여 위원 등록금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여러 특히 212개 대학에서 동결을 했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황우여 위원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동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는 2.4%, 사립대는 2.6%의 상승률을 보인 것을 보면 만약에 이러한 동결의 흐름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올해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국공립대가, 이것은 계속되는 현상인데 항상 상승률이 사립대보다 높아왔다는 점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의지를 갖고 올해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등록금 인상이 없거나 최소한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황우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관심을 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이 등록금도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또 하나 문제가 기숙사 문제예요. 전세·사글세가 지금 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서 학생들이 띄우는 트위터 글이나 고통스러워서 올리는 여러 글을 보면 기숙사 문제가 보통이 아니고 하숙비 집세가 올해 이미 20% 올랐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2% 이 부분이 학생들한테 다가오기 이전에 우선 공부하려면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숙사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기 때문에 3수, 4수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는 고액의 하숙비하고 집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숙사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아주 바늘구멍인데 그 기숙사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건국대가 한 학기에 195만 원, 고려대가 158만 원, 성균관대학이 193만 원, 대표적으로 비싼 데지요.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중앙대 같은 데는 한 30만 원이고, 그래서 학교 간에 격차도 크고, 또 몇몇 학교에서는 지나치게 고액의 기숙사비로써 이렇게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고 그래서 이것을 합쳐 보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과 기숙사비만 합쳐도 학기당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교재비나 생활비를 할 때에는 과연 학생들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내는가,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학생들이 그야말로 안 하는 일이 없고, 참 이것을 만들어 내려면 그 뒷얘기를 들어 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부에서는 등록금에 관심을 갖는 것 못지않게 생활 여건인 기숙사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용 인원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12% 정도만이 기숙사에서 수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특히 여건이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생들에게 가혹하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한 교과부의 입

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록금 못지않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과부에서는 사학진흥기금으로 사립대학 기숙사 확충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활성화시키고, 또 서울시의 유스하우징(Youth Housing)이라든지 에듀하우스(Edu-House)처럼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LH공사의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이런 등과 협의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대학생을 위해서 확대하는 노력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연합의 공동 건립을 유도한다든지 또 BTL, BTO 방식을 통해서 기숙사를 적극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우여 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듣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연도별로 지금 12%를 몇 %로 늘리겠다는 등, 또 아니면 천차만별의 기숙사비를 등록금처럼 어느 정도로 학생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셔야 돼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위원 예, 제대로 좀 만드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우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진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춘진 위원 장관님, 등록금 정말 비싸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춘진 위원 그런데 대학들이 적립금을 많이 쌓아 놓고 있어요. 주로 적립금은 남는 돈이지요? 대정부질문에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미 분리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어떤 법령이나 제도를 고쳐서 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등록금 회계규정을 저희들이 바꿔 가지고요, 2009년 12월 22일날 개정해서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관련 회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공립대학 모두 다 적용됩니까, 사립대학만 적용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사립대학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김춘진 위원 사립대학만이요?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회계만 이렇게 분리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회계를 분리해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등록금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적립을 해서 결국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면 등록금 재원이 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게 이제 투명하게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춘진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대학의 의견이나 이의는 없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마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은 좀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행하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등록금 의존율이 높지요? 그래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편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글쎄, 무슨……

○김춘진 위원 편법을 또 동원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편법의 가능성을……

○김춘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 충분한 연구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는 2010년 3월 1일부터 분리됐다고 하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춘진 위원 그러면 이제 기금회계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이런 데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기본적으로 기금회계라는 것이 등록금을 그냥 무리하게 끌고 와서 다른 데다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

지만 대학 차원에서 기금을 모아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의 장학이나 연구에 이런 기금을 통해서 적립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활성화한다든지……

○김춘진 위원 아니, 기금회계를, 지금 등록금에서 기금에다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건축하고 이런 데 쓴다고 하게 되면 장학금…… 요새 등록금이 비싸니까 장학금을 많이 지급해야 되겠고, 또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 짓는 데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숙사를 대학에도 BTL 방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중앙대는 30만 원인데 건국대학이 195만 원이니까 이것은 30만 원 차이가 아니라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다고 보면 적립금의 일정 부분을 건축비로 떼어 놓은 것은 기숙사를 짓게 강제 규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립금이라는 것이 또 나름대로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제도기 때문에,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우려해서 또 너무 지나치게 과잉 규제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위원 지금 대학 등록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수들 월급을 고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주고 연대도 많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는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등록금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 또 과다 책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적립금으로 넣은 돈을 바로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다라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확대한다라든지 아니면 연구비를 확대한다라든지 이런 쪽에 강제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보시겠다면 이해하지만 대학의 대변인도 아니시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들이 하여튼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학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김춘진 위원 이미 대학이 적립금뿐만 아니라 부동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은 3조 원이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다고 하게 되면 그런 자산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간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이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대학들이 자꾸 등록금만 비싸게 받고, 또 기숙사도 BTL로 지어 가지고 이렇게 200만 원 가까이 받는다고 하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경기·강원 고교평준화 확대 지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제조건은 어떤 법적 근거나 지침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문서화된 지침은 없습니다만, 지난 정부부터 죽 이어 왔던 교과부 내부의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침은 없었는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셨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춘진 위원 그리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여기 서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춘진 위원 그러면 준비기간이…… 지금 보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변경한 지역과 추진 절차 비교표' 이렇게 해 가지고 경북 포항하고 비교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평준화를 확대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번 정부 들어와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이게 가장 최근의 예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신청한 것이 최근……

○김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예가 포항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포항이 2006년이니까……

○김춘진 위원 가장 최근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춘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4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평준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변경한 지역과 추진 절차'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 정부 때부터 평준화 확대 지역에 관련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지요, 어차피 하실 거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서울 노원을의 권영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든든장학금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일관되게 몇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동안 당초 이자율이 2010년도 1학기에는 5.7%에서 2011년도 1학기에는 4.9%까지 좀 낮춘 것 같습니다. 그때 재단에서 대손충당금 당초에 처음 할 때는 0.9% 정도 됐었는데 이게 2011년 1학기에 0.30%로 낮추면서 대체로 지금 이자율을 한 0.8% 정도는 떨어뜨렸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이자가 굉장히 비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4.9% 이자가 비싸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서상기 간사와 사회교대)

○권영진 위원 우리가 든든장학금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했던 취지가 어떻게 보면 대학등록금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학부모들 부담을 덜어 드리고, 또 기존의 대출제도는 학생들이 재학기간 중에도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소득이 없으면 아이들이 이자를 못 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예도 방지하고 이렇게 해서 학부모가 부담하던 대학등록금 부담을 미래의 학생들의 부담으로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요, 지금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미래의 아이들에게 상당한 상환 부담을 안겨 주는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권영진 위원 그래서 아마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용률이 낮고, 실제로 2010년도 1학기 대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든든학자금제도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라고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높은 이자율이 1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금은 재단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부분도, 물론 기재부랑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만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저는 반드시 국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창업기업 지원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 부분들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권영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줄 경우에는 이게 정부재정이 10년 동안 지금 연 평균 해서 985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1% 낮추는 데만 그렇게 많은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채로 낮출 경우에는 정부의 추가적인 보전이 필요 없이 아이들에게, 지금 제 계산으로 3년 만기 국고채의 평균 낙찰금리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1.35%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다만 저희가 3년 만기 이렇게 단기채권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국채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이자 감소효과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건 일반대출하고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이자율을 낮춰 주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일반대출은 없어질 거고요. 그러면 아마 대체로 봐서 3%대의 금리로 든든학자금를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장관님께서 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한 장관이시기 때문에 장관님이 임기 마무리하실 때까지는 이 제도가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갖는 제도를 완비하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소득분위 산정의 문제인데요. 지금 소득분위는 두 가지, 일반학자금대출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소득분위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권영진 위원 그다음에 든든학자금대출은 지금 소득분위 7분위 이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소득분위를 파악하는 게 불가피한데요. 지금 소득분위 파악 방식을, 산정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환산소득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나오는 가계통계에 있는 소득만을 가지고 하지 않고 환산으로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소득에다가 플러스 해서 자산, 이를테면 자동차 보유라든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지 이렇게 죽 해서 그렇게 하면 환산소득으로 해서 1분위·2분위·3분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만 해서 7분위 이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환산소득으로 하고 최종으로 소득분위를 결정할 때는 또 가계소득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분위 애들이 2분위가 되고 7분위 애들이 8분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지금 들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래서 이거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에, 실제로 이용 가능한 아이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이 부분들도 장관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권영진 위원 그리고 전면 무상급식의 폐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2·3학년, 3개 학년을 무상급식 하면서요, 이 재원이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들이 지금 기존의 학교에 시설 투자하고 교육재정 투자하던 걸 다 깎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권영진 위원 지금 아이들 화장실 고쳐 줄 예산 내려 보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실 있는 학교가 평균 30%도 안 됩니다. 애들이 그냥 급식실에서 요리해서 교실까지 들고 옵니다. 그러면 밥이 식어요. 그리고 책걸상에 앉아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급식실 문제도 보면 그동안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던 걸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교과부 같은 경우는 또 그 사정을 아니까 지금 급식실 짓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을 액수를 반으로 깎아서 내려 보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은 학교들은 급식실을 짓지도 못하고 지금 안 지을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사교육없는학교 만들기 시범사업을, 올해가 3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돈 한 푼도 지금 올해 내려 보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서울시에 지금 사교육없는학교 시범학교가 21개가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과부에서 올해 창의경영학교 선정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창의경영학교 선정할 때 서울시교육청에 사교육없는학교……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교육없는학교 시범사업을 마무리를 못 합니다. 이거는 서울시교육청의 잘못이지만 교과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창의경영학교 선정 시에 기존의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없는학교 시범학교들을 우선 배정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예, 이건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相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장관님, 서울대 법인화법 작년 말에 통과됐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시행령 마련을 위해서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출연금 예산 협의도 진행 중이고 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배은희 위원 시행령 만들고 하는 데다 서울대의 국제경쟁력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시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그런 중에 법이 폐지가 되면 그런 걸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 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일단 저희는 통과된 법체제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대가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법이, 지금 폐지법안이 올라왔는데 폐지가 된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시는 그런 서울대 경쟁력을 갖춰 가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들, 진행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정부 입장을 확실히 좀 법안소위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다음에 등록금 대책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크게 국가장학제도를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배은희 위원 그리고 든든학자금, 그래서 대출하는 것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로 2개로 이원화돼서 가자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리고 대학 재원을 다변화해서 등록금 인상 요인을 좀 없애고 또 내부 장학금을 좀 확대시키는……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대출 안 받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줍니까, 늡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다시 한번……

○배은희 위원 대출을 안 받고 대출 대신에 장학금으로, 공부를 잘했을 경우에 장학금으로 갈 수 있는 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장학금이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5배 늘어났고요, 계속 확충하기 위해서……

○배은희 위원 2007년 대비 늘어났고 계속해서 늘어날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배은희 위원 그리고 지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그러니까 든든학자금으로 혜택을 받아서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학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했을까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일반학자금제도가 있는데요.

○배은희 위원 일반대출학자금으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은희 위원 이자도 내야 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되갚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어제 방송 보셨나요, 혹시? 오늘 상임위 준비하시느라고 못 보셨을 것 같은데, 학자금 관련해서 시사프로가 됐는데 학생들이 대출금 때문에 부담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도되는 게 이런 든든학자금하고 기존의 대출학자금하고 구분 안 돼서 막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로 해서 '2700만 원을 꿨는데 갚아야 될 금액이, 30년 동안 갚을 게 1억 얼마가 되더라' 이런 계산이 나왔는데, 사실인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한번 담당자가 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관 송기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원리금 합계가 1억 3000만 원으로 과다하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로……

○배은희 위원 실제로 그만큼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관 송기동 예, 그래서……

○배은희 위원 계산이 과다하게 됐다 이 말씀……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관 송기동 과다하게 됐고, 졸업 당시에 현재 가치로 상환하면 한 5033만 원 정도 이래 가지고……

○배은희 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거 대응하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관 송기동 지금 취재파일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 가지고 이 사실을 다 게시를 했습니다.

○배은희 위원 보도자료를 내면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검색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도는 안 된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프로를 보면 든든학자금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든든학자금 홈페이지라든지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보도된 내용 중의 하나가 제가 만날 지적했던 겁니다. 가난한 학생들은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B학점 이상 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있는 마당에 든든학자금을, 꼭 그거를 학점을 B 이상을 받아야 되는 그 제한요건을 굳이 그렇게 가져가야 되냐 하는 게 지적이 됐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차관님이 말씀하시든지 장관님께서, 차관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서상기 간사, 변재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정부에서 지금까지 일관된 말씀입니다마는 B학점까지가 75%기 때문에 최소한 든든학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최소……

○배은희 위원 그건 장학금이라면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주는 건 맞는데 이거는 대출받아서 가는 건데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하는 애들을 위한 거라면, 사정이 공부할 때 일까지 해야 되는 마당에는 B학점 받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근로장학금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많이, 장학금제도는 많이 있고요. 든든학자금 같은 건 대출금인데 이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부실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이 든든학자금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성적기준은 지켜야 되고, 거기에 특별추천제라든지 보완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크게……

○배은희 위원 아니, 특별추천제도…… 신입생은 특별추천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전 학기의 성적이 어쩌고저쩌고인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과 수능의 일정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난한 학생들은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공정경쟁을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냥 성적우수장학금 얘기도 아니고 든든학자금 얘기인데, 대출받는 건데 그거를 굳이 B학점 이상을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를, 정부에서 고집하시는 이유를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건 좀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워낙 이 정책이 처음에 들어온 취지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에, 그냥 무조건 학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성적이 낮은 것보다는 전문대학이라든지 또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리하게 대학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 정책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배은희 위원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에도 어폐가 있는 게, 그렇다면 장학금도 주지 말아야지요. 공부하겠다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들 보기에는 성적이 굉장히 정말 최소한의 성적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봤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예.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委員 현안보고 중에서 내부형 공모 교장 임용제청 거부 관련해서 강원 호반초, 서울 영림중 경우에 지금 임용제청 거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애초에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좀 사전적인, 사후적으로 연수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침이 미리 전달이 되어서 이런 하자 발생을 예방할 수는 있지 않으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우리가 평준화 지정에 대해서는 지역 차원으로 이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양을 할 때는 좀 더 법적 절차를 완비해서 이양을 하려고 합니다.

○金世淵 委員 이양을 하면 이양의 범위를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시도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金世淵 委員 그러면 일단 거부된 학교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금 결정하신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거부한 학교에 대해서는 당장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金世淵 委員 지금 초빙형·개방형·내부형 중에서 개방형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金世淵 委員 그런데 초빙형 위주로 지금 기존에, 원래는 개방형·내부형 도입 취지가 상당히 좀 퇴색되면서 초빙형 위주로 가던 것을 이번에 내부형을 좀 더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꾸는 것 같고, 또 개방형은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기본적으로 초빙형을 대폭 확대하고 초빙형의 문제점을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임명되는 교장의 40%까지는 초빙형 공모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많이 확대가 된 상태고요, 내부형과 개방형은 좀 점진적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金世淵 委員 그리고 등록금 대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학점 제한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학점 제한……

예, 배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金世淵 委員 예.

그리고 경기·강원 지역 고교입시제도 변경 추진 관련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시도 조례를 역시 이양을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다시 말씀……

○金世淵 委員 입법예고 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자칫 훼손될 우려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도 학군 배정에 관련된 사안은 아마 시도 조례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金世淵 委員 그러면 아까 교장공모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金世淵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서상기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시지요.

○徐相箕 委員 장관님, 두 분 차관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단수로 할 게 아니라 내륙의 삼각벨트로 해서 한 10조 정도 투자하는 것이 국가과학 수요 측면에서 보나 또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으로 보나 결코 이거 무리한 발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960년대 KIST 설립할 때 그 당시의 국민소득 또 그 당시의 수출규모 또 1970년대 대덕연구단지를 만들 때 그때 투자된 금액 또 그 당시의 국민소득, 그 당시의 수출 규모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10조 정도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국가의 무역 규모나 또 국민소득에 비해서는 초라한 규모다 하는 이러한 아주 재미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그 자료를, 지금 저희들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실무자들도 자료를 조사해서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10조 정도 내륙 삼각벨트를 구상하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이게 사치인지 과다한 재정 부담인지

한번 판단해 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계산을 말씀드리면 65년도에 KIST 하나 짓는 데, 하나 만드는 데 미국에서 그때 1000만 불 받았습니다. 대충 매칭펀드를 1 대 1로 본다면, 한 2000만 불 정도로 본다면 그 당시에 우리 수출 규모가 2억 5000만 불, 그러니까 수출 규모가 지금 2000배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충 지금 우리가 30조 정도 투자한 결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정도의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고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좀 더 과감하게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국제과기벨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논의사항 중에 투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이 법안, 법에 따라서 선정은 하되 그 후속조치로서 나머지 두 곳에 대해서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전체 한 10조 정도 투자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과위 정식 출범이 언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3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이제는 파견이 아니고 인원 전출인데 인원 전출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것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교과부에서 국과위로 넘어가는 인원 전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徐相箕 委員 간단하게 좀,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양해해 주신다면 과기실장께서 좀……

○교육과학기술부연구개발정책실장 김영식 연구개발실장인데요, 지금 국과위의 인원이 1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2명 중에서 관련 부처에서 가는 인원이 44명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7명, 저희 교과부에서 37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공모하는 분이 있고 부처에서 공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민간에 대한 공모는 인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3월 28일까지는 아마 선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교과부 자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교육과학기술부연구개발정책실장 김영식 거기에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37명은요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어차피 국과위가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능한 인재를 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徐相箕 委員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가 일반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취업 문제, 그다음에 물가 문제, 학교에 가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잡무입니다, 잡무. 업무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상황하에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거기다가 애들 체벌도 못 하는데 이제는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잡무를 줄이는 게 우리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규제 개혁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떤 목표를 두고 단계 단계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잡무 줄이는, 행정 부담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작년에도 교원 전문성 제고 방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교원 잡무경감대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徐相箕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책, 태스크포스나 전담 직원이 있어서 그것을 규제 완화처럼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계속 팔로우업 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KEDI에서 그것 연구과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徐相箕 委員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자료를,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고, 현장에 가 보면 예산 지원해 주겠다 그래도 예산 지원 정말 손을 흔듭니다. 그것 오면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는데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다, 예산도, 재정 지원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산대학이 양산캠퍼스로 이전해서 지금 구성원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진작돼 있고 학교도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긍정적인 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대에서도 현재 본 캠퍼스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동대구 역세권 개발하고 연관지어서 그 위치가 대학이 있기에는 좀 부적합한 위치다, 이런 결론이 나서 이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국립대학의 이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교과부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우리 대학실장이……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저희 대학지원실로서는 대학 관계자, 총장님 기획처장 등 이런 분들을 지금 접촉을 하고자 합니다.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을 만나 뵙고 우선 개략적인 방향과 이런 것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는 개요를 만들어서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 이후에 그것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徐相箕 委員 물론 학교 이전이라는 게 아주 장기적인 계획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일단은 교과부 차원에서 결론을 내 줘야 그래도 구성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국립대학과 비교해서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데 답이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최대한 장관님을 잘 보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로 들어가는데 일곱 분이 신청하셨는데 잠시 정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10분간 정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5분 발언 시간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 가지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재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김상희 위원 5분이요?

○위원장 변재일 예.

○김상희 위원 김상희입니다.

○김춘진 위원 너무 많이 준다, 5분이면.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하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교과부장관님한테 질의하는 이 자리가 참 정말 괴롭습니다. 교과부장관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가?

이미 교과부장관님께서는 스스로 앞으로는 국회에서는 그냥 바보 같이, 그냥 바보인 척하기로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런 소신도 없는 척하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날치기 관련해서는 시종일관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 도대체가 국민들도 그렇고 교과부 공무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관 하시겠습니까?

내부형 교장 공모 임용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장관님 소신이었지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장 공모제가 제 소신이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도입하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다 포함해서 교장 공모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교육자치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날치기 관련해서 이 중요한 법안, 이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해 주는 대로, 그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육자치 그리고 교육의 자율성, 학교의 자율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소에 가졌던 소신을 다 내팽개치고 계십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는 않습니

다. 제가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계속 이 정부 들어와서 진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보십시오. 최근에 교과부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못하시면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서 사사건건 다 그냥 트집을 잡고 발목을 잡고 계속 갈등을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서 보고에도 있는데요, 교육 평준화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결정된 데가 2006년 포항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이루어진 것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 정부 들어와서 진행된……

○김상희 위원 그래서 2009년도 교육감 직선제 되면서, 올해 작년 하면서요.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감을 직선으로 하기 이전과 이후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평준화와 관련해서는 교육감에 권한이 있고, 이게 교과부령을 개정해야 되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사실 교육청 교육감의 권한으로 간 것 아닙니까, 지방으로,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교과부의 영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죄송합니다만 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감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 권한을 많이 이양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핵심입니다.

○김상희 위원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방교육청에 상당 부분 권한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 중간 단계로 그렇게……

○김상희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006년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도 굉장히 교과부의 자료하고 또 교육청에서 확인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현안보고 4쪽에 보면 '학군 설정, 학생배정 방안 용역' 미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미 용역 연구기관 내용에 다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군, 배정방안 공청회'의 경우에도, 강원도는 연구진 공청회를 2010년 11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했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전형일 3개월 전까지 공청회를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 팩트 자체가 틀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핵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학군이나 학생배정을 하는 절차에서 여론 수렴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김상희 위원 그게 아니라 교육청의 입장과 교과부가 우리한테 낸 보고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달리 보고를 하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교과부가 다시 교육부 입맛에 맞게끔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분명한 그 팩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과부장관 면담 때도 얘기했지만 평준화 관련 교과부령 개정 요청을 반려하면서 평준화 지정의 전제조건으로 이런 사항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동안 과거 정부부터 이어오는 정책의 지속성이나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김상희 위원 교과부장관님, 보십시오. 2006년도에 마지막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그 이후에 직선제 교육감 민선 교육감이 하는 교육청이 출범해서 일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그러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지방교육청에, 교육감에게 권한을 확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래서……

○김상희 위원 이것을 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무슨 전제조건, 법적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부가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래서 권한을 이양하는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 법을 적용할 때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을 개정하는 입법예고한 안을 보더라도 이것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저는 이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교육감에게 권한을 줘야 되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런데 지금도 학군 배정은……

○김상희 위원 그리고 교육감에게 권한을 주되 필요하다면 몇 가지의 필요한 조항들을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현재도 학군 배정은……

○김상희 위원 이것을 왜 시도 조례로 위임을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현재도 학군 배정은 시도의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시도의 교육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까지는 교육감의 권한 아니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것을 굳이 시도 조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학군 배정의 경우에는 시도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장관님하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관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진보적인 교육감들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 주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포항에 마지막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하는 부분은 그 당시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제조건인 것처럼 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그전에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이 두 교육청에서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교과부령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충족을 했으면 안 해 드릴 이유가 없는데요, 명백히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김상희 위원 그리고 강원도는 10월 달에 이것을 요청했지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강원도가 10월에 했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정확한 날짜가……

○김상희 위원 강원도가 12월이고 경기도가 10월인가요? 하나가 10월이고 하나가 12월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10월 달에 이미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1월 말이나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과정 속에서 실무 차원에서 계속 보완 요구를 하고 또 그게 돌아오면 다시 또 요구를 하고 그런 과정을 죽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1월 말에 교과부가 그렇게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과부장관께서 하실 일은 제대로 못하고 권한 행사해야 될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진보 교육감들 발목 잡기나 하고 교육자치 그리고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역할만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며 그리고 교과부의 공무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육자치 부분은……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이라도 교과부장관께서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육자치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

○김상희 위원 그리고 죄송한데요, 제가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사분위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분위의 야당 추천 위원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작년 8월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그 이후로 사퇴 수리가 계속 되지 않고 나중에 사퇴 수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말하자면 야당 추천의 사분위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분위에서 이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을 저는 일시적으로는 중단을 하고 야당 추천 몫의 사분위 위원이 참여할 때 그때부터 정상화시켜서 회의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지금 야당 쪽에서 추천한 그게 조속히 빨리 결정되어서 저희가……

○김상희 위원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추천하셨습니까?

○김상희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러면……

○김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대학들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을 야당 추천의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것을 잠깐 실무자가 좀 말씀하세요.

○김상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위원님, 저희가 사실 그 추천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내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추천하신 분을 못 받아서, 국회 추천 몫을 못 받아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추천받는 대로……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표 수리를 그렇게 늦게 한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우선 그 문제는 교과부에서도 야당 추천 몫이 빨리 추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김상희 위원 이거 사표 수리를 늦게 해서 그럽니다.

○위원장 변재일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환 위원 경기도 화성을의 박보환입니다.

장관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장관께서 전 대학이 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제대로 설치가 안 된 대학이 설치되었다고 허위 보고한 학교가 있다고 언론 보도에 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확인 한번 해 보셨는지, 혹시 실무 책임자 답변 한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지금 실무 쪽에서 한번 답변……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사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언론에 난 보도를 아직 접하지 못했고, 곧 조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환 위원 그것 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지금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거의 껍데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대학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과연 설치 목적에 맞게끔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인데요, 물론 시행 초기라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설치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시고, 앞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내부형 공모제, 교장공모제 시행의 근거가 지금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근거조항이 사실은 좀 약합니다.

○박보환 위원 약하지요? 그런데 이 요령에 따르면 제출 서류의 표절 등 심사하고 선정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교장공모제를 지정 철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영림중학교하고 호반초의 경우에도 지정 철회를 하고 바로 교장임명제로 임명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향후 계획에 보니까요 '임용제청 거부 학교의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시·도 교육청이 교장 발령에 따른 교원 인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좀 막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지정 철회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철회를 할 경우에 또 새롭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감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교육감님 측과 협의해서 학사일정에 혼란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통해서 일단 먼저 요청했고요, 그 부분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정 철회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 다시 지정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상당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보환 위원 이런 일 때문에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영림중학교 학부모들이 보낸 진정서 보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박보환 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거든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래서 저희가……

○박보환 위원 저도 작년에 국감에서도 표절 공모 교장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게 돼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장관께서 교장공모제, 결국은 취지가 학생, 학부모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교장 뽑는 것 아니겠어요? 취지에 맞게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박보환 위원 그다음에는 아까 평준화 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시행령 개정해서 지정 방식 시·도 의회로 넘기고 그다음에 요건을 좀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기존에 평준화를 지정하는 게 앞에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그냥 내부 기준 가지고 해 왔던 면이 있습니다. 또 앞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너무 강화하면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부분도 있어서 적절히 수위 조정을 해서 명문화할 건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보환 위원 장관님, 이번에 지정 신청…… 6개 시지요? 지정 신청 반려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속도전 내서 추진 기간도 좀 짧았고 찬반 여론 수렴하기에도 촉박한 시간이었고, 또 쟁점에 대한 공청회도 안 열렸다는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니, 결정적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군이나 학생 배정이나 아니면 기피 학교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후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걸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보환 위원 그리고 장관님, 평준화 지역 선정에 있어서 교과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요소가 뭐라고 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학군이나 학생 배정이나 또 기피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일단 확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다 나와야 되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박보환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과 또 교과부의 대립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교육 문제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경우에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보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자료를 줄기차게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이를 규명하는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포항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교과부가 2009년도 8월 31일 날 기재부에 예타 대상 사업 신청을 했다는데 그 이전 단계에 교과부에서 뭘 했는지를 달라는데 그걸 왜 안 내놓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잠깐 그거 실무자가……

○이상민 위원 이러는 사이에 시간 흘러가니까 빨리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빨리 좀……

○이상민 위원 아니, 답변 아니라 자료를 달라고요, 자료.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자료 다 필요 없어요. 2009년도 8월 31일 날 기재부에 예타 대상 사업 신청에 이르게 된 그 전 단계에서 교과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기초연구정책관 윤헌주 자료 있

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요. 가져오세요.

○교육과학기술부기초연구정책관 윤헌주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리고 장관님,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예산 소요액을 추산해서 3조 5000억 원으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여기에는 부지 매입비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또 공공기반 조성 비용도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지금 3조 5000억 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거점지역이 지정되면 그 거점지역 한 곳에 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능지역이 이제 같이 연계돼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능지역 되는 전국적 그런 것을 다 망라하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3조 5000억 원이 거점지역 한 곳에 다 투입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거점지역과 함께 설정되는 기능지역, 말하자면 전국적 네트워크 개념이잖아요. 여기에 다 투입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거기다가 이제 연구단이 50개가 이렇게 또……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연구비 들어가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연구단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거점지역에 들어가는 중이온가속기나 기초과학연구원 짓는 데 3조 5000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그게 아닌 걸 분명히 좀 해 주세요. 맞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상민 위원 그리고 과학기술계에서 이런 요망 갖고 있는 건 들으셨지요? 중이온가속기 대형 연구설비와 기초과학연구원을 분산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과학기술계에서 요망하는 거 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들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들으셨고.

다음에 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뭐 이러니저러니 자꾸 지지부진하고 할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내에서 빨리 실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그러려면 이걸 시행하려면 부지가 한 150만 평~200만 평이 필요하다는데 이 부지 확보를 위한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이쯤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과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위 문제가 논의된 것이 출연연 개편 문제와 맞물려서인데, 지금 정부에 출연연 안이 하나도 마련된 게 없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출연연선진화TF 팀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계속 논의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지경부나 또는 교과부나 기획재정부 사이에 의견이 정리가 안 돼서 청와대에서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국과위 출범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출연연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또 국과위 나름대로의 컨트롤 타워……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출연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출연연은 일단 TF 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연 개편이 또 연구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상당히 쉽지 않은……

○이상민 위원 아니, 지금 지경부장관은 아예 출연연들 내놓지 않겠다고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표명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지금 부처 간 협의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장관님이 노력하시는 건 소용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장관님 노력하시지만 해결이 안 되고, 지경부장관은 아예 공개적으로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아시지요? 확인하셨지

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지경부 입장하고 절충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도 그렇고 정년 환원 문제나 연금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전 장관이시나 이주호 장관이나 또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이나 이 문제 해결한다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참, 철저한 노력은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언제까지? 그건 저희들이 공허하다는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시잖아요.

문제 제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국과위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예타권 갖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상민 위원 결국 R&D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는 기획재정부가 안 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토론이나 기획재정부 관료들 얘기는 국과위는 국가 R&D에 대한 큰 틀에서의 기획만 말해야지 세부적인 R&D에 대한 예산 부분은 여전히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가져야 된다고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지금 시행령에 담으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상당 부분 합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합의 단계에 있으면 안을 내놔 보세요. 지금 변 위원장님께서도 안을 내놨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면, 기존에 R&D나 과학기술정책을 맡고 있는 교과부나 지경부나 또는 기획재정부나 국방부나 이런 부처들이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특히 지경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등 이런 데서 반드시 국과위하고 부딪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연구비를 받는 연구 수요자 입장에서는 각 부처도 가야 되고 또 국과위도 가야 되고 기재부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안 놓는대요, 지경부도 안 놓고. 이런 부분이 충돌할 것이, 그래서 국과위가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상당히 무력화되고 공허화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체화되는 시행령 과정이나 또 조직 과정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하여간 위원장님이 마무리하라고 하실 테니까 더 이상 안 하는데,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지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이상민 위원이 솔선수범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박영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상민 위원보다 더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娥 委員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국감 때 KAIST 교수 일부가 산·학·연 협동을 하면서 10억 상당의 주식을 수령하고 또 강의도 하지 않은 비전임교수가, 특히 고위 관료 출신 교수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KAIST가 지급한 사례가 국감에서 지적되었지요, 장관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朴英娥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과부 감사가 연초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우리 부가 KAIST에 대해서 올해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했고요, 또 24일부터 25일까지 추가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지금 그 감사사항에 대해서 감사처분심의회를 거칠 예정이고요, 그 심의회에서 처분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고드리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예, 그럼 감사처분 결과가, 심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본 위원실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지금 서울

대학교 법인화에 대해서 오늘 현안 보고에서 많이 이야기됐지만 KAIST라든가 또는 울산과기대라든가 이런 것이 법인화된 대학의 모델로서 대학의 선도, 특히 이공계 대학의 발전을 이끌어 갈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앞에서 김유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법인화된 학교들이 자율성과 책무성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3월 28일 출범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朴英娥 委員 그래서 김도연 전 장관께서 내정이 됐고 한데, 일견 지금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기재부라든가 또는 지경부에서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려움이 없으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과부가 좀 솔선수범해서 국과위가 제대로 기능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또 타 부처의 협조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지금 그리고,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원래 의도했던 대로 행안부로부터 충분한 인원도 못 받았지만 원래 우리 국과위가 출범할 때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예산정책이라든가 예산배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국과위 출범 목적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급하게 출범하다 보니까 민간전문가의 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점에 있어서 장관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권한에 대해서 좀 시행령에 잘 담아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조직 구성할 때 민간인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말 전문가들에 의한 과학기술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朴英娥 委員 기존의 국과위 조직을, 개편되기 이전의 국과위 조직을 보면 운영위원회 산하에 작년에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하고 지식재산전문위가 신설이 되고 그런데 R&D예산검토전문위가 가장 근간이 되는 조직인데요, 거기 보면 그 어디에도 과학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력기간산업기술전문위원회, 거대기술전문위원회, 국가주도기술전문위원회, 첨단융복합기술전문위원회, 사회기반기술전문위원회…… 이래서 이게 과학기술위원회인지 국가기술위원회인지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도 전문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정책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앞으로 국과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기초과학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켜 가지고 거기서부터 기술의 창출 그리고 융복합 분야 산업의 창출인데 일단 전문위원회 이름부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운영위원회 밑에 어떤 전문위원회가 생길 텐데 거기에 과학 마인드가 좀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아마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옆으로 이렇게……

○朴英娥 委員 그거는 법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리고 인적 구성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열 분의 위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원장은 내정이 됐지만 지금 아무래도 상임 차관 중의 한 분은 예산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임 차관 중 한 분은 민간 과학기술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과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초과학 출신의 상임 차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아마 국과위원장님이 결정하실 일인 것 같고요,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물론 국과위원장이 하셔야 될 사항이지만 어쨌든 아마 출범 전에는 교과부랑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상임 차관을 비롯한 비상임 위원회에 과학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정 위원님!

○김유정 위원 민주당 김유정 위원입니다.

등록금 문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등록금 문제가 단순히 대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부담뿐만이 아니고 이게 자살로 이어진다는 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 2월 달에도 있었고요, 작년 11월에도 학자금 빚 때문에 자살하고 있고요, 또 경찰청 수사국에서 2009년에 발표한 대학생 자살현황을 보니까 249명이 그 해에 자살을 했는데 16명이 경제적인 이런 등록금 문제를 포함한 문제로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정말 '대책을 세우겠다. 잘 살펴보시겠다' 이런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렵게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업난에 부딪쳐서 또 좌절하게 되는데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대학생들은 제대로 꽃도 피워 보지 못하고 지금 등록금 문제 때문에 생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좀 더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국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위원 OECD 국가에서 대학등록금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거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유정 위원 그런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9위거든요. 사실은 국민소득이 2위고 대학등록금이 49위라면 딱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이도 저도 안 되고요.

또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99년부터 2009년까지 일반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35.9% 증가를 했는데 대학등록금은 거의 2~3배가 올랐어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유정 위원 그리고 당시 김형오 원내대표셨고요.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서 나중에 교과부 차관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등록금 액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반으로 줄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액수도 반도 아닐 뿐더러 느낌도 2배 이상 늘었다는 생각이 들지, 이도 저도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답변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느낌이 아니고요, 저희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김유정 위원 실제로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줄였습니까? 전혀, 가시적인 성과나 국민들 피부로 와 닿는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값등록금 공약한 적 없다라는 그런 말씀만 무책임하게 대통령 이하 반복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기획했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고요. 등록금 부담 절반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국가장학제도를 한다든지 든든학자금을 도입한다든지 대학재원의 다변화를 한다든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동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작년 예산 저희가 심사하면서부터, 그 얘기를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지만, 적어도 더 오르지는 말아야 될 것이고요. 느낌으로라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야지 '이게 정말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장관님이 이것저것, 든든학자금…… 뭐가 든든합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국민들이. 아무도 든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학자금대출 건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좀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유정 위원 내 일처럼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

다.

○김유정 위원 사분위 관련해서, 상지대 정상화 과정에서 보여 준 사분위의 결정, 교과부의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비리재단 복귀의 신호탄이 됐다 이런 문제 지적, 작년부터 누누이 했었고요. 또 결론적으로 도미노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광운대나 이런 데 다 지금 구재단 복귀 이루어졌지요? 정상화 심의 중인 덕성여대, 대구대, 동덕여대 지금 마찬가지 과정 밟을 거라고 누구나 명약관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교과부가 비리재단을 옹호하고 오히려 복귀하는 데 지금 강력한 지원자가 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강릉영동대학 분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장관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연루된, 설립자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인데 이 분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평생직업교육국장님 나와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평생교육국장 좀 답변……

아, 지금은 소관이 대학지원실로 바뀌었습니다.

○김유정 위원 넘어갔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유정 위원 주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2005년에 이 학교 설립자 정태수 씨가 교비 72억 원 횡령했지요? 그래서……

알고 계세요? 이 건에 대해서 모르세요? 교과부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횡령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유정 위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강릉영동대학 설립자인데 2005년에 72억을 횡령을 했고 1심에서 유죄 받고 2심 진행 중인데 해외 도피 중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그런데 이 학교를……

이 토픽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동안 학교를 운영했던 현모 이사장은 해임을 했어요, 교과부가. 교과부가 해임을 했는데 이 건을 모르시면 됩니까? 장관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사안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김모 이사에 대해서는 취임 승인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교과부가. 알고 계세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예, 다 사유가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교과부에서 한 일이니까 알고 계셔야지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김유정 위원 그래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이 상황에서 재단이사 4명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임시이사 파견 4명 할 것을 의결을 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예.

○김유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작년 10월에 현모 이사장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그다음에 해임하신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그분도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겁니다.

○김유정 위원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교과부 해임 처분 이틀 전에 현모 이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예, 저희가 다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유정 위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임하셨고요, 내사 종결됐는데 해임 처분 이틀 전에. 내사 종결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사장을 해임 처분한 겁니다, 교과부가.

그리고 그런데 여전히 교과부에서는 검찰조사 결과 해당 이사장이 허위보고를 공모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면서 지금 해임 처분 입장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계시지요, 그런 상황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예, 이 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금 상급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김유정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강릉지청에서 내사 종결이 됐는데도……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내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그분과 관련돼서 이루어진 항소심이 확정되지 않고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그러면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해

임 처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임 처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교과부가.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그러나 효력처분……

○김유정 위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거는 맞습니까?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요청드리고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내사 종결 여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유정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예.

○김유정 위원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더더군다나 해임해서는 안 되는 건이지요, 이거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또 하나, 김모 전 이사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이 '취임 승인거부 처분 이게 적법하지 않다. 취소해야 된다' 이런 판결 내렸는데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 처분 취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김모 전 이사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이것은 그러면 좀 제가 그 정도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 설명을 올리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유정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학의 분규 건에 대해서, 지금 사분위가 여태껏 해 온 일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받고 있고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데 장관도 모르시고 차관도 모르시고 해당 국장도 모르시고, 줄줄이 내려가야지 되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업무 파악을 거기까지 아직 채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좀 설명 올리게 해 주십시오.

○김유정 위원 나중에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다 답변 다시 별도로 하시고요.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장 변창률 예.

○김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이 겁니다. 사분위 상지대 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그렇다……

앉으셔도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다는 이유로 상지대나 광운대나 이런 재단에 대해서는 비리재단 복귀를 확정을 지어서 얼마나 많은 반발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법원의 결정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이런 교과부에서 이 강릉 영동대학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 받고 내사 종결된 건 그리고 행정법원에서 결정내린 사안에 대해서까지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지금 다 엉터리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제가 답변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확인해서……

○김유정 위원 그래서 교과부가 비리재단의, 비리사학의 복귀를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기관이지 사학비리 척결의 중심에 서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위원 정확하게 강릉영동대학 건에 대해서 파악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위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분위의 결정이나 교과부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지대 건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야당 위원들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도미노처럼 계속 일어납니다. 이 책임 장관님이 다 지셔야 되는데 그 짐을 다 어떻게 지시려고 이렇게 파악도 안 하고 계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배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은희 위원 한나라당 배은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현안보고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초등학교 입학한 학부모들도 좀 있고 또 어머니들 모임, 단체나 이런 데 많이 만나면서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 놓고 엄마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교실을 방과 후에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엄마들이 와서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를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 특히 맞벌이 어머님들이 좀 불편함을 느

끼시거나 민원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렇지요. 그냥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시간이 자유로울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학교에 가서 품앗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선생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래서 좋은데,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참 이게 직장을 안 가고 가기도 그렇고 또 안 가자니 다른 학부모들은 가는데 그럴 경우에 혹시 우리 아이가 좀 차별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와서 돕도록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인력을 채용할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단순히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좀 학부모정책과에서 올해 집중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제로 맞벌이 엄마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소해 드리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은희 위원 이런 것은 차츰차츰 없어지도록 가는 게 맞는 방향일 것 같은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배은희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것도 대개가 맞벌이 부부라는 전제하에 이게 스케줄이 잡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힘들더라도 방과 후라든지 이렇게 해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야간에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요.

○배은희 위원 예, 이렇게 해야 아버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아직도 대개가 맞벌이, 특히 서민일 경우에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이런 것이 더 곤혹스럽다는 거지요. 아이들 점심 그냥 공짜로 먹이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서민친화정책이라는 거지요, 이런 거 없애고 가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배은희 위원 그다음에 이공계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교과부장관님이시니까, 주무부처 장관님으로서 이공계 인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의 주무부서 장관이시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배은희 위원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국무회의 같은 데서 이런 의견을 좀 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이공계가 갈 수 있는 부분이 기술고시인 거 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배은희 위원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기술고시 퍼센트도 얼마 안 될 뿐더러, 한 1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고시를 합격해서 가는 지위도 좀 한정적이지요.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쪽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기술고시를 합격해서 가는 사람도 보통 행정고시 합격자들하고 똑같은 부서 배치가 되어야 될 거고요, 우선. 그다음에 기술고시 비율도 좀 늘려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을 교과부장관님이 주장 안 하시면 다른 부서 장관님은 주장 안 하시거든요. 그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되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경영이라든지 이런 건 다같이 교육을 받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공무원 교육……

○배은희 위원 그 공무원 교육 과목에 과학기술에 대한 것도 필수과목으로 좀 이수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예를 들면 TBT 같은 거, 이제 국가 간의 무역이 관세 경쟁이 아니라 기술 장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기술의 선점이라든지 기술의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데 대한 인식, 한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것은 모든 공무원이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 교육에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인,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을 좀 넣자고 주장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거 한번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예.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 유성엽 위원입니다.

아침에 어떤 동료 위원께서 사분위원장 출석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나눴는데 사분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그렇게 통상적인 적정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국회에서 결정하실 일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성엽 위원 아니,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사분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우리는 요구를 하는 건데, 사분위원장 출석이 왜 그렇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까지 보면 사분위의 여러 가지 결정들이 상당히 첨예하고 또……

○유성엽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 이를테면 소청심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출석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질의답변 다 받잖아요, 통상적으로. 아마 행정심판위원장도 수시로 국회에 나올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분들은 공무원들이시고요.

○유성엽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무슨 이게 사안이 아주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분위 활동이 국회로부터나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국회 출석을 꺼리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할수록 와서 여당 위원들 입장도 있을 것이고 야당 위원 입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 주는 것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지대 종전이사 측 4명, 이쪽에 구성원 측 4명이고, 1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임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렇지요. 언제쯤 그것을 정식이사로 채울 예정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학내가 완전히 정상화된다고 판단될 때 하려고 합니다.

○유성엽 위원 그러면 현재 오늘 현안보고에 보면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것이 대학의 경우가 10개 대학, 전문대학의 경우가 8개 대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급적이면, 교과부 입장은 뭡니까? 정상화할 수 있고 정상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정상화를 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까, 현재 교과부의 원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굳이 비리사학재단을 감싼다라는 인상을 받아 가면서까지, 그런 지적을 받아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정상화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어차피 2015년이 되면 대학교 정원 조정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학생수 감안했을 때.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대학들은 잘 골라 가지고 대학에서 직권해산을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정상화를 시킬 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조전혁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유성엽 위원 예, 그러니까 말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래서 무리하게 구비리사학재단한테 학교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교과부가 총대를 메고 무리한 일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보다는 과감하니 정리해 가지고 대학교 정원도 좀 조절하는 길이 맞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상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직권해산을 시키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시겠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구재단한테 돌려주는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해산시키고 폐지시키는 방향이 맞겠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장 임용제청 관련해서, 아까 공교롭게도 전교조 출신이 교장으로 임용된 데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미흡으로 제청이 거부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떻든 저는 그 문제는 교과부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교사 임용권자는 누구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사 임용권자는……

○유성엽 위원 교육청 교육감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기본적으로 교육

감입니다.

○유성엽 위원 그렇지요. 교감은 누가 임용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장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유성엽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 자치단체를 보면 말이지요, 시군구의 예를 들어서 부단체장들, 부시장 부군수들 지금 이사관까지 있어도 전부 해당 시장·군수가 인사권을 갖습니다, 임용권을. 도지사의 경우에도 부지사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한테 임명제청권을 부여하고 30일 내에 임명이 중앙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임용되도록 하는 규정까지 일반자치에서는 시도지사, 자치단체장 인사권을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서 교장선생님 직급이 몇 급이냐 이런 구구한 이야기를 하기는 싫고, 교장 임용권을 군더더기 없이 과감하게 시·도 교육감한테 돌려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난번에 교과부에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때 교원단체들이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유성엽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교원단체에서도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잘못된 관념 속에서 쓸데없는 권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는 것이 교육감한테 받는 것보다 권위가 더 있다 해 가지고 정말 이것은 실질을 무시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령 교원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돌려주십시오. 교장임용권을 돌려주다 보면 굳이 교과부장관이 전교조 출신이니까 임명제청을 거부했네 뭐 했네 하는 이런 논란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다른 사항도 어찌 보면 교육자치를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시도의 권한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아까 가지 않습니까, 평준화 지역 지정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이번 기회에 차제에 이 관련법을 고쳐 가지고 교장임용권을 시·도 교육감한테 100% 돌려드리세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론 내려서 언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사실 같은 취지에서 교사들의 경우에는 지방직화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안이 다 사실은 교원단체나 교원 현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래서 언제 보면 장관님께서도 17대 야당 위원 하실 때에는 교육자치, 교육분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부에 대해서 촉구를 많이 하셨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래서 다음에 언제 한번 이런 현황보고 때 우리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이양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서 추진계획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렵니까, 별도 항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동시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이양해야 될 사안들이 지금 사실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김춘진 위원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을 언제 제일 먼저 실시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난번에 국회 대정부질의 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기로는……

○김춘진 위원 검토했으면 역사에서부터 다 봐야지요, 대한민국의 역사 이런 것부터.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 학교가 있고,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 곳은 과천시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과천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춘진 위원 거기는 2000년 9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고 뭐가 장점이고 좋은 점이 뭔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무상급식 부분은 무엇보다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김춘진 위원 교과부 차원에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 줘 본 적 있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연구용역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위원 이게 1980년대부터 인천에서 실시한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가 오래 됐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실시해서 군 단위는 2008년도까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실시한 학교가 많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문제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장차 나아갈 방향은 뭐고 아마 교과부에서 그런 것 정도는 연구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봤어야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말씀하신 그런 도시들이 다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김춘진 위원 지자체 중심인데 교과부에서 농산어촌이라든가 이런 데 재정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래서 교과부가 관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것은 저희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이 급식관이 문제가 있다고 했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춘진 위원 어때요, 그 무상급식한 학교 한 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춘진 위원 아니,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안 하겠다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당연히 현장에 가 봐야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바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동료 위원님께서 급식관 문제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과천에서 2000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급식관이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있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김춘진 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달라요. 저학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2학년 아이들이 배식을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 배식을 하는 것 보면 딱 맞게끔 나누어서 협동심을…… 교실에서 해요, 과천에 있는 학교. 그런데 거기의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나중에 다 나오고 사람이 없을 때 팔 잡고 저학년은 교실에서 급식하는 게 교육 목적에는 참 좋다…… 왜? 어린아이들한테는 생활지도를 직접 해 주니까. 그래서 교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똑같은 밥을 학생도 같이 먹으면서 생활지도를 해 줘요. 식생활 지도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대형으로 해서 급식관에서 먹는 것만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렇게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 바로 그런 스터디는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 예산이 급식관을 지어 줄 건지 안 지어 줄 건지 거기 장단점 딱 해서, 짓는다면 어디에 지을 건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현장을 찾습니다. 지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제가 틈만 나면…… 예고하고 가면 그런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교장선생님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다 해서 정말 그런 목소리 들을 수 없어요. 잠바 입고 그냥 장관 아닌 체하고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진정한 목소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현장 점검을 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래서 미리 예고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아주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교사라고 해서 오해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감사 결과가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춘진 위원 그런데 강원 호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 1차 심사위원회 불공정하게 했다 그래서 춘천지방교육청에서 3배수 추천해라 뭐 해라 이렇게 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방감사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처벌하기 위해서 감사기능을 하는 게 아

닙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전 국민을 경찰관으로 만들고 검사로 만들어도 그것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감사를 해야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춘진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교과부 하는 것 보면. 처벌을 딱 작정하고 감사를 했다는 오해를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위원 저 추가질의 또 할 겁니다. 기다린 사람은 좀 저기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변재일 그러면 마무리하시고 추가질의 하세요.

○김춘진 위원 저는 바로 우리 장관님께서 이런 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혹시 절차를 다시 다 밟아 가지고 교장에 이전에 응모했던 분이 재응모해 가지고 그분을 다시 추천하면 임명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번에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지금 임명제청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임명절차가 공정하다면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분이 또 응모해서 다시 재선임된다 할지라도 임명하시겠다, 절차만 맞으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공모된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절차가 먼저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면 절차만 맞으면 거부 안 하시겠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끝났습니까?

○김춘진 위원 또 있어요.

○위원장 변재일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마무리하신 거지요?

○김춘진 위원 아니, 하나만……

○위원장 변재일 서면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는 질의순서를 정하실 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순서를 정하실 때 공평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한 명씩 올라가고 야당은 야당대로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변재일 알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리고 위원 상호 간에 문제가 있으면 상호 간에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보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장 변재일 알겠습니다. 김춘진 위원의 질의 순서에 의혹이 제기됐고 김춘진 위원 질의순서 의혹 해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문제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춘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정두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김유정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오랫동안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서면질의로 했다 이렇게 아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회의에서 139건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한 가지 법안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넘어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권영진 의원을 대표발의로 해서 발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일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직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서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 간사와 협의한 결과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된 법률안이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마무리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랑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정리를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프로젝트를 하거나 사업을 할 적에 기획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옛날에 PERT/CPM

기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무엇을 먼저 결정하고 무엇을 한다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도 4월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지구를 지정한다 그렇게 하면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위원회에다가 위원회 사무처 기능을 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지금 장관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지구가 지정된 후에 그 거점지구·기능지구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그때부터 작성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점지구가 지정되고 기능지구가 지정된 이후에도 가속기하고 연구원 등이 어디로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 하는 것은 6월 이후에 논의하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취지인지 그 기획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자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상민 위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타 신청 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뭘 했나, 정책 부서로서 뭘 했나 하는 문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내용은 사립대학인 포항공대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정부가 하는 절차인 것처럼 해서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2007년도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2007년도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에 그런 논의가 있다가 2008년도에 3.5세대 성능 향상 사업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두 가지를 엮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권영길 위원께서 제시한 것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간의 현상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것을 한번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교육감과 장관께서 한꺼번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랬습니다마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결정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께서 제시하신 과학기술기본법과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도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139건의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이관됨으로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법안이 281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셔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사·보임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당 소속 위원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간 법안 중에서 정부 제출 법률 중에서는 많은 법률안이 한글화한다든지 그동안 문제가 된 조항을 정리하는 수준의 법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은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기에 사전 검토해 가지고 이번 4월 임시국회 본회의 때 상정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예, 말씀하시지요.

○이상민 위원 법안심사소위와 관련해서, 교과위에 법안이 많이 산적해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쉽게 결론내리지 못할 그런 법안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뭐냐 하면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권영진 위원도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빨리 빨리 입장을 조율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런다면 폐기·부결하거나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산적해 있어서 마치 교과위가……

○위원장 변재일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가 빨리 정리해서 말씀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결론 못 내리면 빨리 폐기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의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들의 의원입법 발의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가부를 빨리 해야 저희들이 법안 심의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재일 알겠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별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키면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처리 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법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하고 여야 간사 그리고 여당 측에서 한 명, 야당 측에서 한 명, 5명 정도가 모여서 사전에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권영길	권영진	김상희	김선동
김세연	김영진	김유정	김춘진
박보환	박영아	배은희	변재일
서상기	안민석	유성엽	이상민
임해규	정두언	조전혁	주광덕
황우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	재 석
전문위원	이	진 호
전문위원	이	용 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제1차관	설	동 근
제2차관	김	창 경
기획조정실장	김	차 동
인재정책실장	이	상 진
연구개발정책실장	김	영 식
대학지원실장	변	창 률
대변인	이	대 영
감사관	박	준 모
정책기획관	고	경 모
미래인재정책관	성	삼 제
평생직업교육관	김	규 태
학교지원국장	김	관 복
교육정보통계국장	한	석 수
기초연구정책관	윤	헌 주
과학기술인재관	이	진 석
대학지원관	송	기 동
원자력안전국장	홍	남 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장	손	재 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장	김	선 옥